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尹慶老

燕山君 禁標碑 研究

- 大慈洞 禁標碑를 中心으로 -

A Study of King YEONSAHN'S Prohibiting-boundary Stone
(Mainly on the Stone in DAEJA-DONG, KOYANG City, KYOUNG-KI Province)

1995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鄭 東 一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尹 慶 老

燕山君 禁標碑 研究

- 大慈洞 禁標碑를 中心으로 -

A Study of King YEONSAHN'S Prohibiting-boundary Stone
(Mainly on the Stone in DAEJA-DONG, KOYANG City, KYOUNG-KI Province)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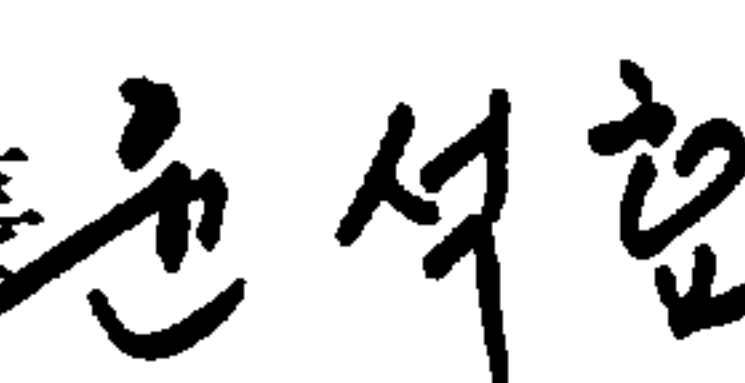
史 學 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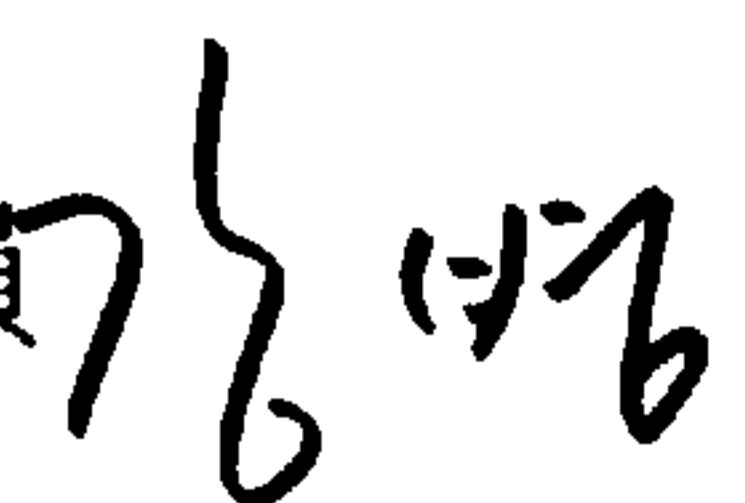
韓 國 史 專 攻

鄭 東 一

鄭東一の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審査 委員  

審査 委員  

目 次

序 言	1
第 1 章 禁標의 起源과 設置 目的	4
1. 起 源	4
2. 禁標의 設置 目的	6
3. 禁標의 區域과 管理	12
第 2 章 大慈洞 禁標碑의 發掘 經緯	25
1. 禁標碑의 發掘 및 確認 經緯	25
2.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	28
第 3 章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32
1. 禁標의 設立과 禁標 區域	32
2.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43
3.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의 撤去	52
結 語	57
參考文獻	60
ABSTRACT	63

序 言

본 연구는 조선시대 燕山君 집권기 경기도 고양시에 세워진 ‘大慈洞 禁標碑’¹⁾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禁標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금표비가 발굴된 것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자동 금표비’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禁標(碑)에 관한 기록은 문헌상에 간헐적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줄만한 자료는 물론 그 實物이 그동안 발굴된 바 없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전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의 발굴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는 데 있다. 두번째는 금표비의 實相 곧, 금표비가 생겨난 연원과 설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究明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세번째는 금번 최초로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의 金石學的인 의의와 함께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후술하거니와 ‘대자동 금표비’는 흔히 石物이 갖는 금석학적 의의 외에도 연산군의 ‘弊政’과 깊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이 금표비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연산군 폐정’의 또 다른 일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廣開土大王 碑文 연구를 비롯한 丹陽 赤城碑, 中原 高句麗碑 등 고대사와 관련된 고대 비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큰 진척을 보였다.²⁾ 그러나 이

1) 이 금표비는 현재 ‘燕山君 禁標碑’란 명칭으로 京畿道地方文化財 자료88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또 다른 燕山君代 禁標碑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어 편의상 발굴된 地名 이름을 부쳐 그 명칭을 ‘大慈洞 禁標碑’라 지칭하기로 한다.

2) 李進熙, 『廣開土王碑의 探究』 一潮閣, 1982.

李亨求·朴魯姬, 『廣開土王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1986.

에 비해 조선시대 비문 및 석물 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금석학적인 연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예컨대 神道碑, 墓碑, 墓標 등의 銘文 판독 및 서체 연구 등 금석학 내지 미술사적 가치를 밝히는데 치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대자동 금표비'는 이상과 같은 금석학적 의의 외에 이 금표비에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이라는 銘文이 담겨 있어 이를 통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의 추론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 '棄毀制書律'이란 법률 조문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것이 연산군 집권기에 들어와 '언문사용금지' 처벌 법률로 사용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구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법률 조항이 '대자동 금표비'에 명문화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에 특히 유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棄毀制書律'이라는 법률 조항을 담고 있는 이 표비로 인해 그것이 세워진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미친 弊害 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후술하거니와 고양시 지역은 이 표비가 세워진 이후 3년간(1504~1506) 혁파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간에 관한 고양시의 역사가 단절 및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대자동 금표비' 연구는 금표비 자체에 관한 연구 뿐

權敬愛, 「廣開土王陵碑文解釋의 再整理」 高麗大學教 碩士學位論文, 1980.

廉胤洙, 「中原高句麗碑小考」 高麗大學教 碩士學位論文, 1983.

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問題點」 『史學誌』 13輯, 1979.

木下禮仁, 「中原高句麗碑」 『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史學論叢』 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事業會, 1991.

鄭泳鎬, 「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조사 경위」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8.

李基白, 「단양적성비 發見의 意義와 적성비 王敎事 部分의 檢討」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8.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3)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輯, 1964.

文玉祥, 「香村埋香碑에 對한 小考」 全國鄉土史研究論文 第3集, 文化院聯合會, 1993.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學校 出版部, 1968.

黃壽永, 「韓國金石文遺文」 一志社, 1976.

金洪哲, 「下溪洞所在 國文古碑 研究」 『향토서울』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76.

만 아니라 고양시 향토사 연구에 주요한 단서와 새로운 연구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높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主 자료로 사용한 것은 금번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 외에 주로 이와 직접 관련된 『燕山君日記』에 크게 의존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금표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기에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초보적 연구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없지 않다. 따라서 금번 이 연구는 금표비에 관한 연구의 端初를 열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第 1 章 禁標의 起源과 設置 目的

1. 起 源

금표비란 왕이나 왕족이 사냥, 군사 훈련, 산림 보호의 목적으로 금표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써, 금표비는 나무로 만든 木柵과 石碑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표 구역의 입구나 산비탈, 하천 등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세워졌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금표는 대체로 두가지의 유형이다. 그 중의 하나가 강원도 原州 稚岳山에 남아 있는 금표 입석이다.⁴⁾ 이 금표석은 소나무 등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와 유사한 예는 경기도 고양시 西五陵⁵⁾ 입구에 존재하였던 禁川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천은 '금골'이란 지명으로만 구전될 뿐 그 정확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째의 유형은 중국에서 자주 보이는 금표의 한 형태로 왕실의 사냥을 위해 금지 구역을 정하고 그 표시로 세운 예이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자동⁶⁾ 금표비는 이 두가지 유형 중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표의 설치는 옛 古代 中國으로부터 있어 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古書이며 經書의 하나인 『孟子』에 보면 “文王의 사냥터는 70리나 되었으며 齊나라 임금은 40리가 된다.”⁷⁾고 하였다. 그런데 똑같은 금표내에서도 문왕의 사냥터는 백성들이 땀감을 얻는 등 왕과 백성이 서로 이용할 수 있었

4) 이 금표 立石에는 「禁標」란 글씨만 기록되어 있음.

5) 경기도 고양시 龍頭洞에 소재한 사적 198호. 昌陵·敬陵·翼陵·弘陵·明陵.

6) 행정구역상 京畿道 高陽市 大慈洞, 조선3대 太宗이 하사한 명칭.

7) 孟子, 「孟子」, 梁惠王章句 下, 文王之囿, 方七十里, 齊王之囿, 方四十里.

으나 제나라 왕의 경우는 40리 안쪽 사냥터에서 일반 백성이 보이게 되면 殺人罪를 적용하여 다스리게 했다고 한다.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書傳에 실려있습니다.’ ‘(제선왕이) 그렇게 큼니까?’ ‘(맹자)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했습니다.’ ‘(제선왕이) 나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로되 꿀을 베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며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용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맹자)가 이 나라 국경에 들어 올 때에 국가에서 금한 곳에서 검문을 받은 뒤에 겨우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가 듣건대 국경선 내 사방 사십리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죄와 같이 한다고 하니 이는 사방 사십리로 나라 가운데 함정을 파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크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8)

이는 고대 중국사회에 있어 금표의 성격을 시사하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금표비 설립에 관한 내용은 좀처럼 알 수 없다. 다만, 高句麗 벽화 등에 보이는 말타고 사냥하는 모습 등에서 당시 사냥을 목적으로 왕과 왕족이 금표 구역을 설정하였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조선조에 들어 왕과 왕족들은 王宮 주변에 일정한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政事에 지친 몸을 궁안 장소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금지 구역을 정하였는데 景福宮의 杏遠亭, 昌德宮의 後園인 秘苑 등이 이와 비슷한 예라 할 것이다.9)

8) 위와 같은 책, “齊宣王이 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라 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 하니이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曰 民猶以爲小也니이다 曰 寡人之囿는 方四十里로되 民猶以爲大는 何也잇고 曰 文王之囿는 方七十里에 芻蕘者往焉하며 雉兔者往焉하여 與民同之하시니 民以爲小不亦宜乎잇가. 臣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臣聞 郊關之內에 有囿方四十里에 殺其麋鹿者를 如殺人之罪라 하니 則是方四十里로 爲阱於國中이니 民以爲大 不亦宜乎잇가.

9) 정재훈, 『한국의 옛 조정』 대원사, p.62, 1990.

요컨대 금표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왕과 왕족들이 자신들의 전용 사냥터,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목책이나 석비로 세운 표석이 곧 금표비라 할 수 있다.

2. 禁標의 設置 目的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금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금표비의 설립 목적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중 첫번째는 왕이 사냥을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 구역 내에서 사냥과 함께 휴식도 취하였다.

연산군 10년 8월 19일 丙子條에 보면

19日(丙子) 전교하기를,

“ ‘文王의 동산에는 서민들이 자식들처럼 왔다(庶民子來)’ 하였으니, 그때는 풍속이 순박하므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당연히 할 일을 하더라도 不肖한 무리들이 싫어하여 꺼리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미 배어 없었노라. 田獵같은 것은 淫佚(방탕한 것을 하며 노는 것)이 아니요, 정사하는 여가에 기운을 풀고 사방을 살피는(行氣省方) 것인데, 어찌 백성의 폐를 헤아리겠는가? 또 庶人들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진실로 쓸데 없는 일이다. 쓸데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불의를 자행하게 된다. 洪伯慶이 형조 郎廳으로 있을 때에 죄인이 이를 쏘려는 자가 있었고, 禹允恭이 光州判官으로 있을 때에 쏜 자가 있었다.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같은 수 있겠는가? 서인으로서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일체 금단하라.” 하였다.¹⁰⁾

10) 丙子傳曰文王之囿庶民子來其時風俗淳朴故如此令雖爲所當爲之事不肖鎮壓憚怨故既誅除之矣至於田獵非爲淫佚政事之暇行氣省方耳豈計百姓之弊乎且庶人學射固無用非徒無用因比恣行不義如洪伯慶爲刑曹郎廳時有罪人欲射之禹允恭爲光州判官時人有射之者風俗之不美有如是耶庶人學射者一禁.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丙子條(『국역연산군일기』 8권, 민족문화추진회, p.40, 1972. 이후로 『일기』라 약칭함).

라 하였다.

위와 같은 전교로 볼때 연산군은 중국 고대의 文王을 예로 들어 정사에 피곤해진 심신을 사냥으로 풀기 위하여 금표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또 왕의 금표 구역을 일반 백성들이 범할 것을 우려해 일반인의 활쏘기 또한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왕의 경우 금표 지역이 넓고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며 자유로이 출입하였던 점에 비해 연산군은 금표 구역 내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일체 자유로운 출입을 용납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일찍이 聖君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함과 아울러 龍飛御天歌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세상의 백성들을 교화시키기에 힘썼다. 이 용비어천가를 일명 與民樂이라고 하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다. 곧, 왕 혼자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과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민락을 하면서 동시에 성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금표의 이용 대상 면에 있어서도 성군과 폭군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즉, 성군은 금표를 백성들과 함께 이용하며 즐겼으나 폭군은 금표 구역으로 자신만이 이용하며 일반인의 출입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또 10년 8월에

“옛말에, ‘선왕의 법을 따른다’ 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선왕 때의 일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으로 말하면, 위에서 시행하도록 명하는 것은 예전에 하지 않던 것이라 하여 저지하고, 아래서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기를 계청하니, 이 어찌 옳은 일이며, 田獵으로 말하면 10旬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무엇이 정사에 해로워 불운하게 아뢰는 것인가? 이는 곧 스스로 편하려는 계책이다. 禁標로 말하면 小民들이 자주 범하게 되므로 그렇게 죄준 것이니, 만약 범하지 않는다면 어찌 반드시 죄주겠는가? 또 금표 한계가 넓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범하기 쉬우니, 그

禁限을 넓게 하여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錄楊坪도 또한 금표 안에 넣도록 하라.”¹¹⁾

고 하였다.

이 내용은 왕이 조선조 先王의 법에 따라 전렵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금표 구역 내로 침입하는 일반 백성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연산군은 금표 내에서 아주 오랜 기간만 사냥을 하지 않으면 나라 일에 해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금표를 정하고 백성들이 이를 범하기 때문에 금표 구역을 더욱 넓힌다며 금표 구역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왕이 자신의 전용 사냥터로 만들기 위한 금표의 설치에 대하여 조선 중신들은 옛 제왕의 예를 들어 그대로 따르고 있다.

10년 8월에 柳 淳¹²⁾ 등이 아뢰길

“만약 흉악한 사람이라면 경연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반열에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사냥하는 일은 절도 있게 하면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옛 제왕도 또한 모두 행하였으니, 정사에 마음을 두다가 때로 나가 한다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편하기 위하여 아뢰었겠습니까? 금표는 곧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그 한계를 넓히는 것도 또한 무방하며, 연향도 또한 모두 부득이한 일이므로 天災가 없는 때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¹³⁾

11) 啓古云遵先王之法令亦可遵先王時事也以法令言之上命之行則以爲古所不爲而退之下所欲爲則啓請必行是豈可乎以田獵言之井十旬不返則時出而田何害投政而於紅啓之是乃目安之計也以禁標言之小民等數有所把故罪之如比若不把之則何必罪之今禁限不麻故民易伯順令廣其禁限乃得不把錄陽坪亦今入禁標內又介宴享或進.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丁卯條(『일기』 p.26).

12) 柳 淳(1441~1517), 조선초의 文臣, 本貫은 文化, 燕山君代에 領議政을 역임. 中宗 反正에 功臣으로 수록.

13) 洵等曰若兇人則非唯不可入於事行之有節則亦未爲不可古之帝王亦不可使在於朝列也全獵之帝王亦皆行之留心政治而時出之則何害裁就以爲自安而啓之乎禁標乃所當爲之事也廣其標限亦爲無妨宴享亦皆不得已之事時無天災則所當行也.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0日, 丁卯條(『일기』 pp.22~23).

라고 하였다. 이는 금표가 수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때 금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왕에게 直言할 수 있는 중신들이 각 사화 등을 통해 화를 당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금표를 세우게 되는 두번째 목적은 군사를 訓練시키기 위해서였다.

연산군 10년 8월에

전교하기를,

“대저 백성들이 사는 땅은 임금의 땅 아닌 것이 없어 사사로이 할 수 없으므로 그 取捨와 與奪이 마땅히 위에 있어야 한다. 지금 禁限을 세운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하려는 것이다.”¹⁴⁾

하였다. 위의 기록에는 온 나라의 땅을 왕의 소유로 본 연산군의 통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그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하기 위하여 금표를 세우고자 하였다. 또, 同王 8월 9일에

9일(병인) 金 勸 등이 戒諭文를 지어 올렸는데,

“지금 도성밖 동서 근방지역에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은 봄·가을 사냥과 군사 조련을 위한 곳으로써 食治하고 수렵하는 장소이므로 모두 국가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다.”¹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연산군대 금표 설립 초기에는 옛 先王들과 같이 사냥과 군사 훈련을 위해 금표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세종30년 12월 10일조에 보면 세종이 고양 지역의 대자암 부근을 講武場, 狩獵場으

14) 傳曰大抵民人所居之地莫非王土非所得而私之取舍與奪當在於上今立禁限者欲於近地鍊兵行獵.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7日, 甲子條(『일기』 p.14).

15) 丙寅金勸等製戒論文以進曰茲者都城外東西近地樹標禁人出入爲蒐獵鍊兵之地食治禽獵之所皆國家不可廢之事.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9日, 庚寅條(『일기』 p.21).

로 삼아 이 일대를 사냥금지구역으로 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세조 18년 4월에 西郊에 거동하여 경천, 옥련 등지에서 사냥하고 저녁 때에 이르러 환궁하였다.¹⁶⁾ 이곳 금표 내에서는 주로 도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이 주둔, 수렵 훈련을 하였다.

금표를 세우게 된 세번째 목적은 유흥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연산군 11년 5월에

“왕이 興濟를 거느리고 금표안에 나가 노닐기에 틈나는 날이 없으므로, 菓關이 있으면 곧 口傳으로 하비하게 하였다.”¹⁷⁾

이는 왕이 금표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내용은 연산이 금표 내의 유흥으로 나라 정사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입으로 하비케 한 것은 선비들의 상소 등을 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연산군 11년 7월에

왕이 승정원에 묻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는 곳이 있었다. 隋에는 汾陽, 唐에 驪山, 前朝에 이르러서도 長源이 있어 고려의 詩人이 읊은,

푸른버들에 문 닫힌 열아홉 집이요, 綠楊閉戶八九屋

밝은 달에 발을 걷은 서너 사람이더라. 明月捲簾三四人

라는 글귀가 있다. 그 詩辭를 읊어보니 곧 화려하고 진기한 경치를, 천년 뒤에도 悠然히 상상할 만하다. 이제 藏義門 밖에 산 밝고 물 고와 참으로 한 조각 절경이므로, 禁標를 세워 離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외정부와 외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

16) 幸西郊畋于敬天玉蓮等獵至暮還宮. 『태종공정대왕실록』 제35권, 18년 4월 12일 壬辰條.

17) 王率興濟出遊禁標內無虛日故有菓關即今口傳下批. 『燕山君日記』 第58卷, 燕山君 11年 5月 6日, 庚寅條(『일기』 p.290).

하매, 영의정 유 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¹⁸⁾

이는 연산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금표를 세우고 궁을 지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내용 중 수십칸의 이궁은 곧 行宮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이궁은 위급시에 왕이 임시로 피하는 행궁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오직 유흥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의 폐정이 심화되면서 금표는 본래의 의미인 사냥이나 군사 훈련보다도 유흥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연산군 12년 1월에는 왕이 말 천여필을 두고 항상 안장을 실어놓고 나가 놀기를 기다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왕은 이 말들을 타고 마음대로 금표안을 다니면서 놀고 술을 마시는 것을 일상생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금표 내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폐륜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同王 12년 7월

“왕이 禁標 안 길을 따라 豆毛浦에 놀이가므로 궁녀 천여 명이 따랐었는데, 왕이 길가에서 간음하였다.”¹⁹⁾

이는 금표 내에서 있었던 일들 중 구체적인 지명과 출입자,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이 내용으로 주로 경치좋은 곳과 도성 주변에 금표가 설정되었고 왕이 금표에 행차할 때에 궁녀가 대규모로 동원되었으며

18) 王問承政院曰自昔帝王莫不有燕遊之所隋有冷陽唐有驪山至於前朝亦有長源高麗詩人有綠楊閉戶八九屋明月捲簾三四人之句詠其辭則其麗景奇致千載之後悠然可想令藏義門外山明水麗眞一段奇境欲樹禁標構離宮數十間以爲假息之地其與議政府議圖形以進領議政柳洵等啓上教兄當. 『燕山君日記』第58卷, 燕山君 11年 7月 1日, 甲申條(『일기』 p.337).

19) 王由禁標內路遊豆毛浦官入千餘從王淫千道傍.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7月 18日, 乙未條(『일기』 p.677).

간음 등의 폐륜적인 예가 금표 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금표 구역이 정해지고 금표비 설립 초기에는 사냥과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금표가 이용되었으나 연산군 집권 후기로 들어서면서 유흥과 폐륜의 목적으로 금표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禁標의 區域과 管理

(1) 금표의 구역

금표의 구역은 늘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시대와 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연산군이 자주 인용하던 중국의 문왕과 제왕도 30여리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고대에 있어 금표의 구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전기에는 비교적 도성 주변의 좁은 구역이 사냥터로 이용된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냥터는 항상 일반 백성을 통제하지 않고 왕이 사냥에 임할 때만 일시적으로 출입금지구역으로 삼은 듯 하다.

금표비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연산군 10년 8월부터이다. 『燕山君日記』 제55권 연산군 10년 8월조에 보면 처음 금표비를 세우게 된 것은 任士洪²⁰⁾이 인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 금표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확장된다. 다음은 금표가 세워진 뒤 처음 보이는 기록인 10년 8월 6일의 내용이다.

6일(계해) 都城門을 열도록 하였다.

李季全·閔孝曾 등이 새 길을 답사하여 정하였다. 嘉麟院으로부터 昌敬陵 남쪽을

20) 任士洪(~1506), 조선조 전기의 權臣, 本貫은 豐川, 甲子士禍 등을 주도한 인물.

둘러 幸州의 길과 합하여 禁標를 세우고, 북쪽은 達峴으로부터 성까지의 거리가 30~40리인데, 산 언덕이 끊어진 곳에는 모두 木柵을 설치하여 그 안의 人家를 모두 철거시키고, 전지도 모두 경작을 금하였다.²¹⁾

라 하였다. 금표를 인도한 사람이 임사흥으로 지목한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이는 임사흥이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며 연산군에게 유홍과 폐륜을 부추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 중에서 昌敬陵²²⁾은 현재의 高陽市 龍頭洞에 위치한 서오릉 중의 한 곳이다. 이 곳을 서쪽으로 하여 幸州의 길과 만나게 되면 그 경계는 현재의 花田洞과 玄川洞인데 이는 현재의 昌陵川을 그 경계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강 방향의 금표는 幸州의 길과 醴浦가 만나는 江梅洞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역은 지금의 고양시 지역 1/3 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금표로 설정된 지역 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였고 논밭 耕作을 禁하였으므로 금표 설치 초기부터 고양 지역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위의 기록은 금표 설립 초기에 금표의 표식을 목책으로 한 금표비의 재질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후의 기록들은 주로 금표 구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내용들이다. 연산군 10년 8월에는,

전교하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온 하늘 밑이 왕의 땅 아닌 것이 없고, 온나라 사람이 왕의 신민 아닌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만약 다른나라 토지를 침범하여 차지한다면 잘못이지마는, 내 나라 땅을 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서쪽은 弘福山 惠

21) 李季全 閔孝曾等查定新路自嘉麟院循昌敬陵南與幸州路合而禁標北自達峴距城幾三四十里山島絕斷處皆設木柵其內人家並撤之田皆禁耕.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6日, 癸亥條(『일기』 p.13).

22) 昌敬陵. 昌陵은 조선조 8대왕인 睿宗과 그의 妃 安順王后의 능이며 敬陵은 睿宗의 형인 追尊의 德宗과 그의 妃인 昭惠王后의 능이다.

陰峴으로부터 恭順陵에 이르기까지와 동쪽은 수락산으로부터 綠楊坪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표 안에 넣고, 큰 길을 峨嵯山 등처로 나가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여 수목이 무성하여지기를 기다리면 禽獸도 살게 되어 연병과 사냥을 할 수 있을 터이니, 경기 관찰사 安潤德이 李季全과 함께 가서 금표를 세우되, 畫員 2인을 데리고 가서 지형을 그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²³⁾

라 하였다.

위의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왕 자신이 온 나라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금표 구역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금표의 경계가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이는데 楊州의 弘福山²⁴⁾을 거쳐 高陽의 惠陰峴,²⁵⁾ 坡州의 恭順陵²⁶⁾에 이르는 지역이 금표에 포함되었다. 이 기록으로 보면 현재 고양시 전지역이 금표 구역 내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고의 연구 대상인 大慈洞 禁標碑도 이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금표비가 세워져 있는 대자동 間村마을은 기록에 보이는 惠陰峴과 恭順陵 사이인데 구체적으로 惠陰峴으로부터 남쪽 5리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 혜음령은 都城으로부터는 60여리 떨어진 거리이며 이곳 대자동에 금표비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당시 이곳이 高陽郡 地域의 行政·交通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조선조 전기 고양군 청사는 이곳으로부터 북쪽 3리 지점인 古邑마을에 있었으며 漢陽과 中國, 朝鮮 북부지방으로 연결된 關西大路²⁷⁾가 이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

23) 傳曰古云全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若他國土地侵有之則非矣我國之地惟意所欲有何不可西則自弘福山惠陰峴至恭順陵東則自水落山至綠楊坪皆今入標內而大路今出峨嵯山山等處如是而待樹木茂密則禽獸可居可以鍊兵打圍今京畿觀察使安潤德同李季全往樹禁標率畫員二人圖形以啓.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6日, 癸酉條(『일기』 p.37).

24) 楊洲郡 長興面 石峴里 일대의 산.

25) 고양시 碧蹄洞과 坡州郡 廣炭面 龍尾里 사이에 위치한 고개.

26) 坡州郡 條里面 奉日川리에 소재한 사적 205호. 恭陵은 睿宗의 元妃인 章順王后의 능이며 順陵은 成宗의 元妃인 恭惠王后의 능이다.

27) 또는 燕行路, 義州路라 부르기도 한다.

이후 금표는 楊州의 豐壤宮²⁸⁾과 光陵²⁹⁾까지 연이어 세워지게 되고 도성과 금표 구역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하여 금표비가 세워지게 된다. 금표의 구역이 확대될 때 직접 왕명을 받고 시행한 官廳과 官吏는 도성 주변에 위치한 漢城府, 工曹堂上, 京畿 監司 등이었다. 이들은 금표 구역이 왕명에 의해 정하여지면 도면을 이용하여 이를 정리하고 관리하였다.

금표의 구역을 넓히면서 연산군은 王陵도 예외를 두지 않고 금표 구역으로 삼았는데 왕의 조부인 敬陵 안 守護軍도 금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금표 안의 묘, 능 등은 관리하지 않아 풀밭으로 변하고 田地는 모두 황폐화되었다. 또한 漢城의 입구인 慕華館의 담장 모퉁이에 木柵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게 하고 오직 왕이 行幸할 때에만 임시로 철거토록 하였다.

한편 연산군 10년(1504)에 들어서게 되면 금표 구역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고루 확장되었다. 10월에 도성으로부터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남쪽 금표의 면적을 넓혔다. 연산은 李季소 등에게 그 경계를 大江으로 하여 그 앞을 새로이 금표로 삼게 하고 인적을 막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산군 10년 10월까지 금표 구역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당시 정해진 구역은 다음과 같다.

우찬성 李季소·경기 관찰사 安潤德·승지 尹 珣이 금표에 가서 살펴보고, 도면을 만들어 올리고 아뢰기를,

“號鳴山 술당리로부터 작령(까치재)을 따라 귀암에 이르기까지 토성을 쌓되 높이를 10척으로 하고, 성밖에는 구덩이를 파되 넓이와 깊이를 각각 3척으로 하며, 귀암 서남당 산고개로부터 우이현까지는 표를 세우고, 또 걸석현에 토성을 쌓고, 이동으로부터 직동까지 무릇 8개처에는 삭장(창던지기 연습장)을 만들며, 주엽산동으로부터 새

28) 양주군에 있던 離宮의 명칭.

29) 南楊洲郡 富平里에 소재한 사적 197호, 조선조 제7대 世祖와 그의 妃인 貞熹王后 尹氏의 능.

길을 따라 그 노상에 표를 세우고, 잉읍현 및 소야동·내송현에는 모두 토성을 쌓으며, 마산현·길점·쾌라리현·추현은 모두 막아버리고, 도 함정원부터 웅주현·묘적사동·동구·문신각 동·동구를 지나 평구역 북쪽 길 위까지는 금표를 세우고 근방에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또 별도 군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면 스스로 범해 들어오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³⁰⁾

이 구역은 도성으로부터 동으로 70리, 서로 60리, 북은 65리, 그리고 남으로 10리였다. 현재의 行政區域으로 본다면 서울과 그 주변에 위치한 高陽, 楊州, 廣州, 坡州, 抱川 안쪽 지역이 금표에 포함된 것이다. 연산군 11년에 들어서도 왕은 중국 文王의 囿苑이 사방 70이라 하면서 금표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이후 연산이 中宗反正³¹⁾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금표는 도성 四方으로 백리에 이르기까지 넓혀지게 된다.

동왕 11년 6월에 금표는 동으로 龍津에 이르고 남은 龍仁, 북으로는 大灘에 이르며 서로는 臨津에까지 넓혀졌다. 당시 기록에는

전교하기를,

“경기의 사면으로 백 리를 도형에 의하여 금표를 세우라.”³²⁾

하였다.

도성으로부터 1백리 안의 금표구역은 동북에 廣州, 楊州, 抱川, 永平까

30) 右贊成李季全京畿觀察使安潤德承貞尹珣往查禁標作圖以獻曰自妻鳴山述堂里尊鵠嶺抵龜巖築土城令高十尺城外掘坎廣深各三尺自龜巖城隍堂山嶺至牛耳峴立標又於乞石峴築土城自梨洞至直洞九八鑿造梁場自往葉山洞從新路於路上立禁標仍邑峴及所地洞內松峴並築土城馬山峴吉岾掛羅里峴槌峴並防塞又自檻阱峴經態走峴妙寂寺洞口文臣各洞口至平丘驛北路上立禁標使旁近居人分守又別置軍士以守之則自無犯入者矣傳曰可.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0月 25日, 壬午條(『일기』 p.120).

31) 1506년(연산군12) 成希顔, 朴遠宗 등이 연산을 폐위하고 晉城大君을 추대한 사건.

32) 傳曰京畿四面百里依圖形立禁標. 『燕山君日記』第58卷, 燕山君 11年 6月 26日, 己卯條 (『일기』 p.130).

지, 서남쪽으로는 坡州, 高陽, 陽川, 果川, 通津, 金浦 等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금표구역으로 포함된 곳에 살던 500여 戶의 백성을 모조리 강제로 내쫓고 그 대신 內需司³³⁾의 奴子를 옮겨서 채우게 하였다.

연산군은 금표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예외없이 네 모퉁이에 금표비를 세우게 하여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죽여 거리에 버려두게 하였다. 그후 연산군 12년(1506)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서쪽의 富平도 금표에 포함시켰는데 그 거리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도성으로부터 70여리였다.

연산군 12년 2월의 내용에 금표 구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하여 금표의 한계를 정하였는데, 서북은 고임진 석벽 고랑이를 기점으로 하여, 무미동 뒷고개·저구리·차유령·상수역 남쪽 고개·소라산·마차산 대탄을 거쳐 실장산에서 그치고, 동북은 종현산에서 시작하여 오방산·천보산·석문고개·백련천을 거쳐 수종산 대찬에서 그치고, 남쪽은 대고현에서 시작하여 소고현 작은 내에서 그치고, 서쪽은 경안역에서 시작하여 마산·선장산·문현산·현릉·남산·천천현·장성곶·양재역을 거쳐 습은현에서 그치고, 서남은 양화도에서 시작하여 고부평 뒷고개에서 그쳤다.³⁴⁾

이렇게 하여 금표는 도성으로부터 100리 이내의 구역으로 정하여졌는데 이로써 京畿道の 절반 이상이 이 금표안에 들어가 백성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표1)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록과 같이 도성으로부터 100리까지의 지역이 모두 금표 구역으로 정해져 민가가 모두 철거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점이 있게 된다.

이렇듯 광활한 면적이 모두 금표에 포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아마도 『연산군일기』의 기록에 보이는 금표 구역의 100리 설

33) 조선조의 관청으로 궁중에서 사용되는 미곡, 포목, 잡화, 노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

34) 命定禁標限西北起古臨津石壁古郎伊由無迷洞後帖猪仇里車踰領湘水驛南帖所羅山磨嵯山大灘盡室藏山東北起鍾懸山由五方山天寶山石門峴白連川盡水鍾山大灘南起大羔峴盡小羔峴小川西起慶安驛由馬山禪場山門縣山獻陵南山穿川峴長城串良才驛盡習隱峴西南起楊花渡盡古富平後帖.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2月 2日, 壬午條(『일기』 p.532).

정은 왕의 전교일 뿐 실제로는 연산군의 폐위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표 구역의 광대한 설정은 당시의 政治・經濟・社會에 큰 폐단으로 이어져 燕山君 자신도 결국 中宗反正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연산군과 중종반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뒤의 금표의 철폐에서 좀더 자세히 기술토록 하겠다.

표1) 燕山君代 各 時期別 禁標碑 區域 變遷 및 現 行政區域 比較表

연 대	금 표 구 역	현 재 의 행 정 구 역
연산군 10년 (1504) 8월	도성으로부터 30~40리 지역 (가린원, 창경릉, 달현)	고양시, 양주군, 서울시 일대
연산군 10년 (1504) 8월 21일	도성으로부터 60~70리 지역 (홍복산, 공순릉, 혜음령, 아차산, 수락산, 녹양평)	서울시, 고양시, 양주군, 파주군, 남양주군, 구리시, 광주군 일대
연산군 10년 (1504) 6월	도성으로부터 동은 70리, 서로는 60리, 북으로는 65리, 남으로는 10리 지역 (호조산, 작령, 우이현, 잉읍현, 추현, 묘적사 등)	서울시, 고양시, 양주군, 파주군, 포천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군, 하남시, 성남시, 김포군 일대
연산군 11년 (1505) 6월	도성으로부터 100리 (광주, 양주, 포천, 영평, 파주, 고양, 양천, 과천, 통진, 김포)	서울, 김포, 고양, 파주, 포천, 광주, 과천, 시흥,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시 일대
연산군 12년 (1506) 2월	도성으로부터 100리 지역에 서쪽으로 서해에까지 이르는 거리	위 내용 지역에 인천 지역이 포함됨

결국 연산군대의 금표 구역은 다른 여러 왕들에 비해 그 면적이 지나치게 광대하였으며 범입자에 대한 잔혹한 處罰도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어져 그가 暴君으로서 불리우게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금표의 管理

넓은 구역의 금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주로 잔혹한 형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금표의 범입자는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일시에 모든 생활 기반을 빼앗긴 백성들이 금표 구역 밖에서 굶어 죽거나 금표 구역 내에서 잡혀 죽거나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도면을 통하여 금표의 구역과 도성과의 거리가 결정되면 이를 管理하기 위하여 官吏를 두고 경계선을 만들었다. 먼저 도성 안쪽 금표에는 담을 치지 않고 성을 쌓았는데 이 禁城의 높이와 면적은 景福宮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였다. 또한 경복궁의 서쪽에는 금성과는 별도로 가시 울타리를 쌓아 금표로 삼았는데 仁王山³⁵⁾ 아래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도성 밖의 금표는 木柵과 담을 쌓아 관리케 하였다. 당시 동서 금표의 담장 높이는 4장이며 宮의 禁牆 높이는 3길³⁾이 되게 하였는데 담을 높게 쌓은 것은 금표 밖에서 안쪽을 바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성 부근의 금표가 禁牆 등으로 축조되자 연산군은 성 주변의 인가를 모두 철거시킨다. 당시 금표의 管理를 위해 撤去된 인가들은 주로 금표 구역 안쪽을 굽어 볼 수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집들이었다. 그 결과 도성 주변의 駝駱山과 木覓山の 人家들이 철거되어 연산군 12년(1506)에 이르게 되면 景福宮 내에서 보이는 인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 높은 위치의 인가 철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금성의 밑으로 통행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금지하였다.

연산군 12년 1월에

35) 景福宮 서편에 위치한 산으로 현재 仁旺山으로 표기하나 이는 일본인에 의해 바뀌어진 명칭이다.

傳校하기를

“내일은 마땅히 친히 성터를 살펴볼 것이니, 李詮의 집 앞길 이북과, 鄉校洞 軍堡 이북과, 大寺洞 蛇山君의 집 이북과, 典醫監洞 남편 屏門(골목어귀의 길가)이북과, 壽眞坊 南里門이북과, 濟用監洞병문 이북과, 景福宮 下馬碑이북과, 三間 屏門이북과, 松針橋에서 社稷에 이르는 이북과, 西部 行廊에서 懸鼓屏門에 이르는, 이상의 인가는 전부 몰아내라” 하였다.³⁶⁾

위의 내용들은 금표의 管理가 철저한 통행 제한과 범입자에 대한 처벌로 가능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官吏들이 동원되었다. 당시 도성 주변의 금표 구역 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표의 서쪽 普賢院과 요로에는 警守所가 설치되어 금표의 출입을 막게 하였다. 본래 경수소는 도성 주변을 비롯한 각지에 설치되어 도적과 화재 등을 막는 임무를 지닌 곳이었다. 그러나 금표의 설치 및 구역 확대로 본래의 목적인 치안유지와는 전혀 다른 연산군의 놀이터를 지키는 곳이 되었다.³⁷⁾ 또 경수소와는 별도로 郎廳을 포함한 羅將과 內需司의 別坐, 書題 등을 수시로 보내 管理케 하였다. 이들은 옛 軍營에서 낮에는 사무를 보고 밤에는 숙직을 하게 하여 왕이 거동할 때마다 행차에 따르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금표에 침입하는 사람을 체포,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처벌케 하였으며 이들 官吏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雷吏라 부르게 하고 羅將의 옷 색깔은 반팔에 검은색 天翼을 붙여 입히게 하였다. 금표 내의 管理는 주로 내수사의 官吏와 奴子들이 맡게 하였다. 이들 노비들은 금표의 경계에 둘러 살며 雜人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奴婢들도 官吏와 마찬가지로 금표의 출입을 보장하는 標示를 하였는데 色絲로 팔뚝에 묶고 官吏가 署名

36) 傳曰明日當親查城基自李詮家前路以北鄉校洞軍堡以北大寺洞蛇山君家以北典醫監洞南邊屏門以北壽眞坊南里門以北濟用監洞屏門以北景福宮下馬碑以北三間屏門以北松針橋至社稷以北西部行廊至懸鼓屏門以上全家刷出.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8日, 戊子條(『일기』p.502).

37) 元永煥, 『朝鮮時代 漢城府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pp.89~90, 1985.

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금표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범입자가 계속 발생하자 수시로 금표에 대한 국가 관청이 범입자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 연산군 10년 10월에 보면,

밤에 왕이 매행하다가, 동소문 밖에서 소를 탄 두 사람이 활과 살을 지니고 網囊을 맺는데, 한 사람은 동쪽 금표로 들어가 양주로 가는 것을 보고, 환궁하여 바로 전교하기를,

“내금위 10인, 겸사복 5인, 선전관 1인, 금부낭관 1인을 보내어 양주로 가서 목사 와 함께 잡아 오게 하고, 경기 관찰사와 양주목사는 이를 규찰하여 금단하지 못하였 으니, 국문하라. 또 인가가 금표에 가까우므로 이와 같이 범하는 자가 있으니, 그 동 대문과 수구문을 닫으며, 한강 舟楫을 없애고 모두 금표를 세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전일 정승들이 의논하기를, ‘箭串을 금표에 넣으면 나뭇길이 끊어진다.’ 하였으나, 아래에서 강행하는 것을 위에서 강행하지 못하겠는가? 다시 불러 묻으라. 또 중요한 길 에 초소를 세워 관리를 보내어 지키도록하고, 3개월이면 교체시키되, 교체할 때에는 범 한 사람의 유무를 아뢰라.”하였다.³⁸⁾

위의 기록은 금표를 제대로 管理하지 못한 官員을 국문케 하고 또 금표 의 통제를 위해 도성의 문과 한강 다리를 막는 당시의 금표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요한 도로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는데 이로써 도성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큰길은 막히게 되었다.

한편 왕명을 받은 官吏들은 금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承命牌란 출입 표시패를 가지고 있었다. 승명패는 왕이 직접 하사하는데 주로 금

38) 夜王微行東小門外見騎牛二人待弓矢擔網囊一人入東禁標指楊州去還宮即傳曰遠內禁衛十人無司僕五人宣傳官一人義禁府郎廳一人往楊州同牧使捕來京畿觀察使楊州牧使不能糾禁其糴之且人家與禁標相近故有如此犯入者其閉東大門水口門去漢江舟楫並立禁標又傳曰前日政丞等議云箭串入禁標則樵採路絕然下之所強上不能強乎其更召問且於要路設鋪遣官守之三朔相逆時啓犯入人有無.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0月 17日, 甲戌條(『일기』 p.106).

표 침입 범인을 색출하거나 금표 안의 내수사 노자들을 관리 감독할 때 착용하였다. 이들 官吏에게는 구체적으로 금표의 관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었는데 관리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이 내려졌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연산군 12년 4월에 보인다.

전교하기를,

“금표안에 사는 사람들을統領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官十例에 의하여 길을 나누어 衙門을 설치하고 堂上·郎廳 각 한사람씩을 두되, 소송 이외의 驛馬를 함부로 타는 것, 잡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 과실나무나 雜木을 작별하는 것 등 일체 모든 일을 다 단속하게끔 衙前·卒徒들을 마련하여 차정해 주고, 모든 公事를 직접 서로 통하여 거동할 때면 길옆에 엎드려 기다리게 하라. 단속을 잘하지 못한 자는 죄를 처벌하여 파면하고, 임무를 잘 보면 資級으로 상주리라.” 하였다.³⁹⁾

이 내용은 금표 구역 내의 관리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를 통해 볼때 관리들은 금표 구역 내에서 다른 임무는 없이 오직 금표 구역을 보호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관리들은 평상시에는 철저한 통제로 금표를 관리하다가 왕이 幸次하면 각 官吏끼리 통하여 각자 임무를 수행하였다.

금표의 입구와 내부의 管理 중 일부는 內需司의 奴婢를 두어 하였지만 특수한 집단을 기거시키기도 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써 연산군 12년 3월 23일조에 보면,

23일(계묘) 해무리가 졌다.

전교하기를,

39) 傳曰禁標內居人不可無統領依官十例分遣談衙門置堂上郎廳各一員詞訟外如驛馬濫騎雜人出入所伐果木及雜木等一應諸事並皆檢察衙前卒徒磨鍊定給九公事直自相通舉動時於路傍府伏祗候不能檢察者決罪罷黜若着於其任營資. 『燕山君日記』第62卷, 燕山君 12年 4月 14日, 癸亥條(『일기』 p.593).

“奉先寺에 御容(임금의 영정)을 태일하여 移安하라. 중들은 모두 찾아내어 문서를 작성하여 머물러들 만한 자는 장가들게 하여 금표 내외 밭을 갈아먹고 사냥할 때에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 나머지는 표 안에 있는 內需司의 종의 집에 붙이게 하라.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住接을 허락한 戶首를 중죄에 처하고 알면서 고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치죄하라. 외방의 중도 또한 감사·수령에게 영하여 찾아내서 둘 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금표 내외 종의 집에 붙여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리고 淨業院여승도 둘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와 각처의 여승은 아울러 연방원의 房婢로 붙이게 하라.” 하였다.⁴⁰⁾

라 하였다. 위의 내용은 당시 朝廷의 佛教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즉, 佛家の 僧들을 금표로 몰아넣어 일을 시키고, 女僧들은 奴婢로 만들어 금표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이는 불교 탄압을 통해 또 하나의 연산군의 폭정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백성의 경작 금지와 단순한 수렵장으로서의 금표 관리는 금표 구역 내의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폐단을 낳게 하였다. 또, 금표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해서 강제적인 행정 구역이 개편되기도 하였다. 즉, 京畿道 땅의 절반 이상이 금표에 포함되자 京畿와 가까운 忠淸道의 고을을 갈라 京畿에 붙이고 楊州, 坡州의 禁標 밖으로 남은 땅 및 吏民들은 이웃 고을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各驛들도 금표 밖으로 옮겨 설치케 하였다. 이때에 富平 땅의 경우에는 罪人이 산다하여 완전히 革罷한 후 모두 금표에 포함시켰다.

연산군 집권 후기에 이르면서 금표의 관리를 위하여 군사들도 금표 내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표 내의 군사 훈련을 위한 주둔지도 금표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즉, 江原, 黃海, 京畿, 開城의 군사들이 당시 금표 내의 綠楊坪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금표에 포함되자 이를 鄭今院

40) 傳曰奉先寺御容擇日移安僧人等推刷成案可留者令娶妻許耕標內田打圍時役使其餘屬標內內需司奴家如有逃者許接戶首置重典知而不告者並治罪外方僧亦令監司守令推刷可留者留之其餘並屬標內奴家以供役使且淨業院尼僧可留者留之其餘及各處邑僧並屬聯芳院芳婢.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3月 23日, 癸卯條 (『일기』 p.574).

坪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러한 주둔지의 이전은 군사상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와 유사한 국방과 교통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기록이 10년 11월조에 있는데,

병조가 아뢰기를,

“下三道(경상·전라·충청도)烽燧軍이 왕래할 때에 표장을 주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봉수는 다만 변방 일의 유무를 보고할 뿐이니, 모든 변방일을 만약 제때에 馳報한다면 봉수가 없어도 되니, 모든 봉수를 폐지하라.” 41)

하였다. 금표의 管理를 위해 都城을 지키는 군사는 주둔지를 잃고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烽燧가 폐지된 것을 보면 이미 국방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봉수는 본래 불과 연기로써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변방으로부터 중앙에 그 상황을 가장 빨리 알려주던 교통 전달 수단이다. 42) 이 신호를 통해 왕은 국난 극복의 방비책을 세우고 일반 백성들은 인근의 성으로 피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러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봉수를 금표 구역 관리를 위해 폐지시킨 것이다. 봉수제의 폐지는 왕만이 사용하는 금표 구역이라는 점과, 철저한 형벌에 의한 금표의 관리와 더불어 다른 선왕에서는 찾기 어려운 예로써 이는 연산의 폐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41) 兵曹啓下三遺烽燧在南山而南山令入禁限烽燧人往來時當給章標乎傳曰烽燧只報邊事有無耳越邊若能時馳報則燧烽可無也諸烽燧並罷. 『燕山君日記』 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1日, 丁亥條(『일기』 p.127).

42) 南都泳, 「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 『한국사론9』 국사편찬위원회, 1981.

第 2 章 燕山君 禁標碑의 發掘 經緯

1. 禁標碑의 發掘 및 確認 經緯

1991年 高陽市에서는 新都市가 건설되기 이전에 관내의 문화재를 일제 조사 기록기로 하고 이 연구 작업을 高陽文化院에 의뢰하였다. 문화원에서는 이에 따라 3년에 걸친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高陽市文化財大觀」⁴³⁾으로 발간기로 하였다. 대관의 책임 조사 및 원고 집필은 연구자가 맡았고 책자의 편집은 指定文化財, 非指定文化財로 구분하였는데 지정문화재에는 고양시 내의 총 문화재 52점을 수록기로 하였다. 한편 비지정문화재에는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와 새로이 발굴된 문화재를 수록기로 하고 약 2년의 기한으로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착수하였다.

문화재 조사는 현장 조사에 앞서 각종 文獻을 통한 1次 史料 정리부터 하였다. 문헌 조사에 기본 자료로 「高陽郡誌」⁴⁴⁾를 이용하였는데 이 책자는 1755년 英祖年間에 발간된 것이다. 주로 조사된 문화 유적지는 개인 묘가 많았으며 大慈洞 일대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금표비가 발굴된 대자동은 현재 서울에서 統一路를 따라 북쪽 지방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곳으로부터 남서쪽 4km에 高陽市廳이 위치해 있고 일산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서남쪽 8km이다. 본래 이곳 大慈洞의 間村마을 부근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高陽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다.

「高陽郡誌」에 의하면 이곳 間村마을 뒷편 5리 지점에 고양군 청사가 위치해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鄉校, 南別館, 東軒, 文廟 등이 위치해 있었으

43) 고양문화원, 「고양시문화재대관」 고양, 고양문화원, 1994.

44) 李錫禧, 「고양군지」 고양, 고양군, 1755.

며 특히 남별관은 중국왕의 使臣을 맞이하던 곳이다. 이 청사는 世宗代에 지어진 것인데 戰亂을 겪으면서 그 모습이 頽落하였고 仁祖 3年(1625) 금표비의 동쪽 5리 지점인 고양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곳 고양리는 1914년 서울의 忠正路로 군청사⁴⁵⁾가 옮겨질 때까지 289년 동안 고양의 행정적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때 금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옛 군청과 새롭게 옮겨간 군청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문화·통신 등의 요지 역할을 한 곳이다. 또, 이곳에는 이러한 지리행정학적 특징과 함께 朝鮮朝 王孫의 墓들도 수십기 위치해 있어 왕족들의 대규모 족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이중 금표비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대표적인 묘로는 太宗의 아들인 溫寧君⁴⁶⁾과 謹寧君⁴⁷⁾을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玉山君⁴⁸⁾, 寧仁君⁴⁹⁾의 墓들도 금표비와 같은 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중 가장 가까운 거리인 30m 앞에는 戊午士禍⁵⁰⁾때 流配되었다가 1504년 甲子士禍⁵¹⁾때 7父子가 연산군에 의해 死刑당한 茂豐君⁵²⁾의 墓도 위치해 있다.

대자동의 이러한 地理的·歷史的 위치로 보아 이곳은 일찌기 금표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다. 또 『燕山君日記』에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고양땅 大慈山⁵³⁾에 사냥을 자주 나갔다는 기록과 금표비의 발굴은 이곳이 금표 구역 내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으로 금표비를 처음 발굴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1월 17일 오후 1시경 이곳 대자동 일대의 全州李氏 묘역 관리

45) 현재의 적십자병원 자리. 1914~1936년까지 사용.

46) 太宗의 셋째 君.

47) 太宗의 넷째 君.

48) 太宗의 손자이며 謹寧君의 장남.

49) 太宗의 曾孫, 玉山君의 둘째 아들.

50) 1498년(연산군4) 金駟孫 등 新進士類가 柳子光 등 勳舊派에게 화를 당한 사건.

51) 1504년(연산군10) 연산군의 生母인 廢妃尹氏 賜死문제로 연산군이 일으킨 사건.

52) 太宗의 曾孫, 號는 西湖主人.

53) 고양시 大慈洞에 소재한 해발 124m의 산. 崔瑬장군 묘가 있다.

자에게 묘의 분포 상황을 듣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묘의 조사부터 시작하였다. 금표비는 이중에서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茂豐君의 조사를 마치고 錦川君 묘역의 석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굴하였다. 비는 묘의 오른쪽 文人石과 新墓碑 사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생김새가 일반 묘비와 구분되어 쉽게 발굴할 수 있었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비문의 내용 중에 금표라는 기록이 있어 금표비임을 알았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묘역 앞쪽의 묘비와 신도비에서는 비의 뒷편에 年號와 주체자가 기록되어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 비의 경우 뒷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고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비는 처음 발견 당시부터 오랜기간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색이 비의 각 면에 묻어 있었다. 후일 이곳을 管理하고 있는 全州李氏 子孫에 의하여 이 비가 약 10여년 전 금표비 부근 묘역의 정화사업 도중 땅 속에서 발굴되어 묘비인 줄 알고 이 묘역 위에 세워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발굴된 금표비를 먼저 실측과 사진 촬영을 한 뒤 비문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뒤 좀더 자세한 文獻調査를 위해 文化院으로 돌아왔다. 1987년도에 본 문화원에서 발간한 『高陽郡誌』에 금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燕山君時代에 만들어진 금표비임을 확신하고 다음날 魚漢 文化院長께 조사 보고를 하였다. 사진과 함께 금표의 내용을 들은 어원장은 이곳 大慈洞에 거주하면서 고양 지역의 金石文에 조예가 깊은 鄭漢昌先生께 諮問 요청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문화재대관의 발간에 자문을 맡은 郷土文化研究委員會 회의를 소집하였다.

3일후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향토문화연구위원회에서 연구자는 금표비의 발견 경위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연산군대의 금표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정한창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금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거론치 않았으나 연산군대에 세워졌다는 건립시기 문제와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자에게 考證을 받았다.⁵⁴⁾

대자동의 금표비는 『燕山君日記』 56卷의 10년 8월 내용 기록에 구체적인 지명으로 확인되었다. 즉, 惠陰嶺과 恭順陵 사이에 標를 세웠다는 기록과 棄毀制書律이 연산군 당대에만 금표 침입에 적용한 법률이라는 점이 밝혀져 대자동의 금표비가 연산군대의 금표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

연산군 금표비는 1994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⁵⁵⁾ 비의 형태도 발견 당시와 큰 변화는 없으나 필자가 그동안 몇차례 拓本을 위해 碑身을 씻어 비문은 예전보다 훨씬 뚜렷한 상태이다. 그후 이 금표비는 1995년 文化財管理局과 京畿道, 高陽市 等 關聯機關의 調査와 建議로 京畿道 地方文化財⁵⁶⁾로 指定되어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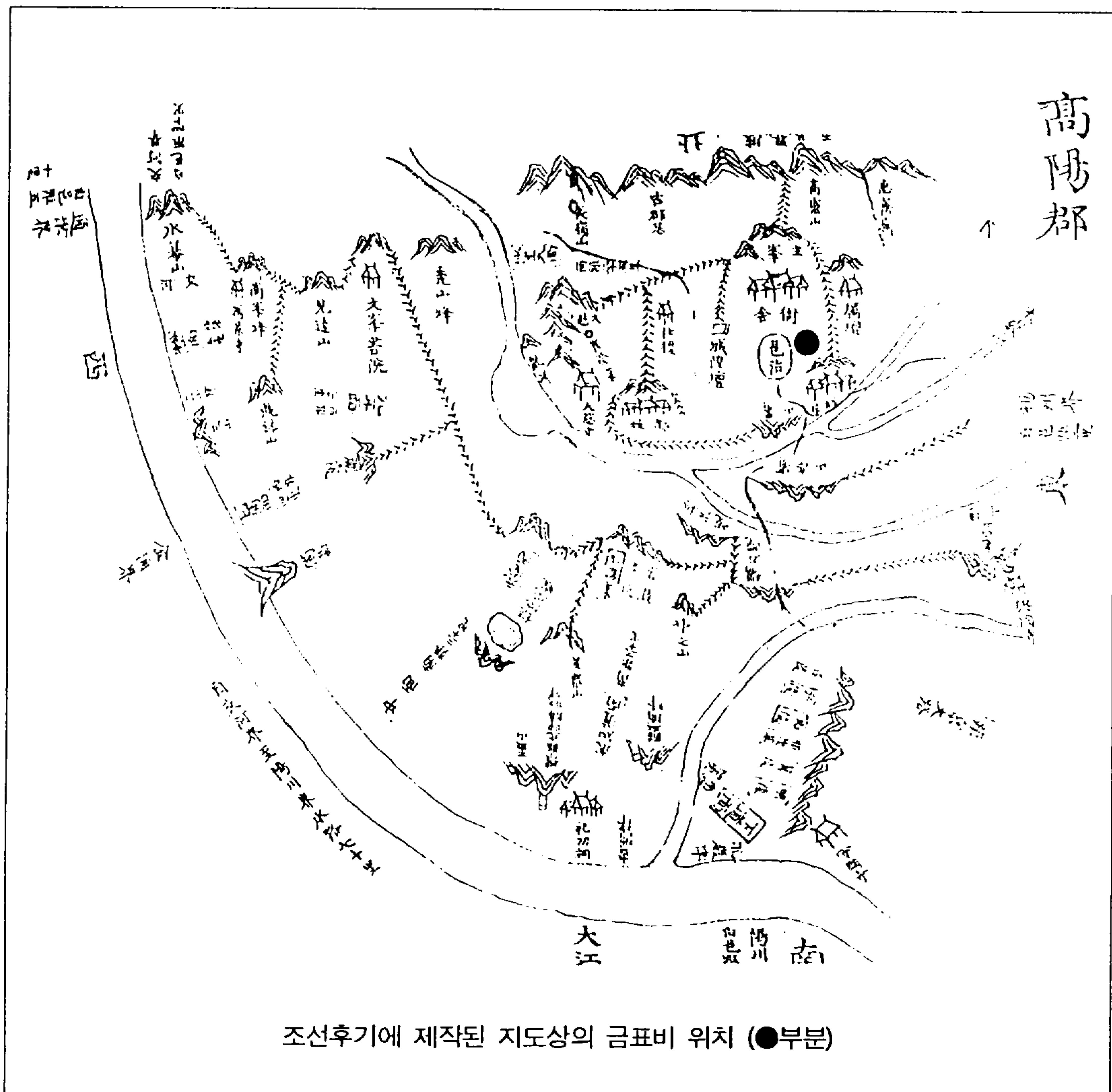
금표비는 花崗巖 재질로 되어 있으며 비의 전체적인 모습은 長方形이다. 비의 규모는 총높이 147cm, 두께 23cm, 가로가 55cm이다.

비는 현재 臺座와 碑身, 碑頭의 構造인데 이중 대좌는 근래에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새로이 만들어 놓았다. 비신은 본래 회백색의 화강암이었으나 오랜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황토색이 보이고 있다. 비의 윗부분 20cm를 이루고 있는 비두는 아무런 문자나 문양은 보이지 않으나

54) 향토문화연구위원회의 자문과 문화재대관의 감수를 맡은 한성대학교 국문학과 鄭後洙 교수에게 고증을 요청, 『국역연산군일기』 내용을 통해 금표비임이 확인되었다.

55) 연산군 금표비 건립 당시에 이곳의 행정지명은 高陽郡 沙里大面 大慈里이다.

56) 京畿道 文化財 자료 제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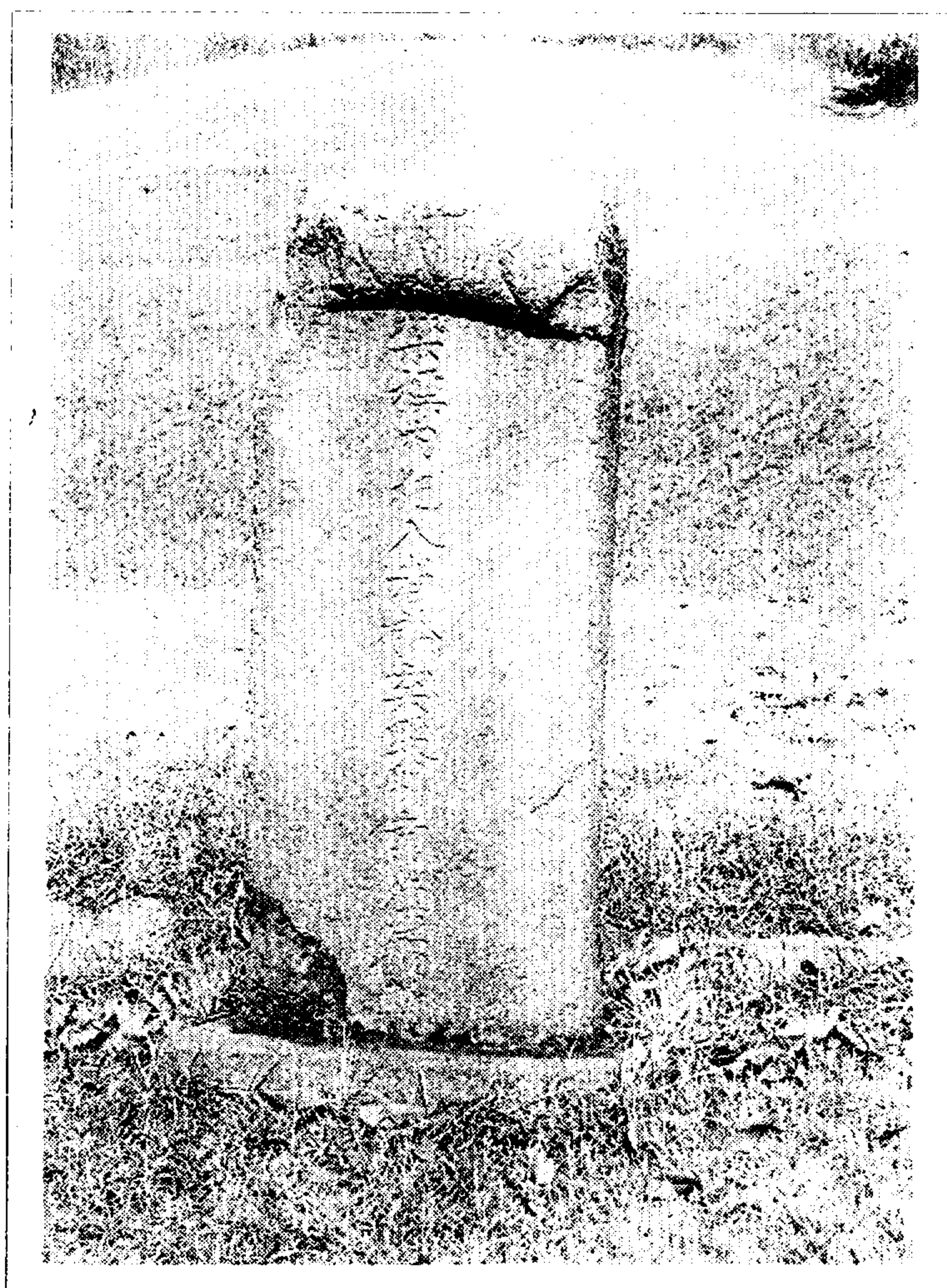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의 대부분은 깨져있는 상태이다. 깨진 모양이 한 방향으로 일정치 않고 훼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아 도끼나 정 같은 것에 의해 毀損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자동 금표비에는 모두 14자의 비문이 앞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書體는 해서체이다. 금표비에 기록된 14자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處斬”

이를 간단히 국역해 보면 “금표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棄毀制書律에 의해 處斬한다.”라는 내용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棄毀制書律인데 이 법률은 본래 중국 大明律의 하나로서 조선조 전기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연산군 10(1504)년에는 연산군이 한글 使用禁止法으로 도용하였다. 다시 그후에는 금표 범입자에게 적용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토록 하겠다.



연산군 금표비 근경



연산군 금표비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대자동 일대

第 3 章 燕山君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1. 禁標의 設立과 禁標 區域

(1) 금표의 설립

다음은 연산군대 대자동 금표비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산군대 이전의 금표 모습이 『世宗實錄』 세종 30년 12월 10일조에 보이는데 당시에 고양땅 해음산 등이 사냥터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왕을 위한 사냥 금지 구역일뿐 일반 백성들도 땀감을 하는 등 왕과 백성이 같이 이용할 수 있었고 그 면적도 일정한 구역만을 설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왕이 행차하지 않는 시기에는 금표 구역 내에서 경작도 가능하였고 범입자에 대한 처벌도 연산군에 비해 훨씬 가볍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표비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연산군의 즉위 초에는 윤필상, 이극돈 등 성종 때의 인자와 사람이 있어 조정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위 4년부터 사화의 기운이 돌더니 1498년에 무오사화로 많은 인재가 도퇴되고 다시 1504년 연산군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과 폐비윤씨 사사사건으로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이후 연산군 주변에는 전조에 있던 충신과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은 없고 다만 임사홍, 임승재 등과 같은 간신과 권신들만이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특히 임사홍 부자는 당대에 풍류객으로 술과 향락을 좋아하였는데 이들은 연산의 포악한 성품과 자질을 이용하여 수많은 폐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간원, 홍문관, 정언 등 언관을 모두 혁파시키고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는 모두

중단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연산은 전국 각지의 미색여인을 골라 바치게 하고 매일 유흥을 일삼았는데 처음에는 도성 내의 궁 깊숙한 곳에서 있었으나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갔다. 특히 경치가 좋은 곳에는 이궁 정자 등을 짓게 하고 금표 구역으로 삼았다.

이러한 弊政이 심화되면서 연산군은 도성과 그 부근에 금표를 세워 경기도 수백리 땅을 모두 풀밭으로 만들어 짐승이 살게 하였다.

연산군 10년 8월에는

“인군은 어찌 밤낮으로 수고만 하고 말 것이겠는가? 정사하는 여가에 때로는 놀며 구경하여 中和의 기운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께서도 群臣을 거느리고 수렵의 예를 행하셨고, 文王의 동산도 또한 수렵을 위하여 둔 것이니, 그 望遠亭·成山浦·衍禧宮 길을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라.” 57)

연산군은 治世의 상징인 世宗을 예로 들어 狩獵을 하고 이에 필요한 금표 설정을 합리화하려 했으나 금표 본래의 의미인 사냥과 軍士訓練보다 개인적 유흥의 장으로 금표를 이용하여 결국 朴元宗과 成希顔 등 中宗反正 세력에 의해 폐정을 끝맺게 된다.

금표비가 세워지고 그 경계를 구분하는 木柵이나 가시울타리, 禁牆, 禁城 등이 만들어지면 이곳에는 일반 백성들은 절대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 금표 구역은 해당 官吏, 官聽에 의해 徹底히 管理, 통제되었으며 58) 中國 사신 등 외부에는 일체 비밀로 하거나 합당한 命分과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다. 연산군 11년 8월 기록에 금표 구역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57) 傳曰人君矣待勞勞肝而已行政之暇時遊觀以養中和之氣故世宗率群臣行蒐狩之禮文王之囿亦爲蒐狩而設也其寒望遠亭成山浦衍禧宮之路禁人通行.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8日, 乙亥條(『일기』 p.41).

58) 尹泰榮·具素靑, 『李朝五百年野史』眞文出版社, 1972.

鄭飛石, 『李朝女人史話』正晉社, 1976.

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東亞出版社, 1963.

21일(계유) 전교하기를,

“望遠亭 이남으로 백 리를 한계로 하여 禁標를 세우고 陽川縣을 革罷하며, 망원정 근처의 도로에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되, 李季소을 불러서 가서 금표를 세우게 하라.”

하매, 계동이 아뢰기를,

“망원정에서 이남으로 가면 富平 관아의 문에 이르는데, 관아를 거쳐서 바닷가까지 40리쯤과, 양천으로부터 서쪽으로 金浦·通津을 거쳐 甲串에 이르는 70여 리쯤은 다 바닷가 경계가 되므로 표를 세울 것이 없으며, 표를 세워야 할 곳은 망원정으로부터 부평에 이르는 사이 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금표를 세우면 세 고을에 사는 백성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다 楊花渡(양화나루)를 거쳐서 분주히 나갈 것이므로 騷擾하게 될 것 같사오니, 監司로 하여금 먼저 모조리 내보내게 한뒤에 표를 세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⁵⁹⁾

이 내용으로 보면 금표의 구역이 도성에서 漢江을 건너 西海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각 지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지금 현재의 면적과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연산군 11년 7월에는

이로부터 동북으로는 廣州·楊洲·抱川·永平에서 서남으로는 坡州·高陽·陽川·衿川·果川·通津·金浦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백여 호를 모조리 내보내고, 內需司의 奴子(종)를 옮겨서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棄市를 하니, 樵夫·牧童의 길이 끊겼다.⁶⁰⁾

59) 癸酉傳曰望遠亭以南限百里立標革陽川縣且望遠亭近處道路勿人物通行其召李季全往立標季全啓自望遠亭南抵富平官門由官至海濱可四十里自陽川以西金浦通津至甲串可七十餘里皆以海爲界不順立標所富立標者自望遠亭至富平間耳但先立禁標則三縣居民其數勘多皆由楊花慶弊出恐致騷擾請令監司先刷出後立博曰可. 『燕山君日記』第59卷, 燕山君 11年 8月, 癸酉條(『일기』 pp.374~375).

60) 自是東北自廣州楊洲抱川永平西南抵坡州高陽陽川衿川果川通津金浦等地刷出居民五百餘戶從內需司奴子以實之立標四隅濫入者棄市蕉牧之遺節矣. 『燕山君日記』第58卷, 燕山君 11年 7月 1日, 甲申條(『일기』 p.337).

고 하였다. 이는 윗쪽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京畿道가 금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광대한 금표 내에서는 주민들을 내쫓는 대신 內需司의 노비들만 살게 하여 일반 백성들의 인적이 끊이게 되었다.

左贊成 李季全·京畿觀察使 宋軼이 禁標의 경계를 물린 地圖를 바치니, 서로는 臨津 건너편 5리쯤에 이르고, 동으로는 龍津에 이르고, 북으로는 檜巖에 이르고, 남으로는 龍仁縣北에 이르렀는데, 전교하기를,

“반드시 백 리가 되도록 한계하여야 한다.”

하매, 軼이 아뢰기를,

“畿內의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갔사오니, 가까이 붙은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에 붙이소서. 또, 楊州·坡州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吏民들을 이웃 고들에 옮겨 붙이고, 금표 안의 各驛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楊州鎭의 軍丁을 다른 고을로 옮김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⁶¹⁾

위의 기록은 이미 대자동 금표비가 있는 고양지역이 금표안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즉, 군 자체가 완전히 금표에 포함되어 그 본래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그 부근의 군에 付處시켰다. 당시 고양군청은 현 금표비가 세워져 있는 대자동 古邑마을로, 군 청사는 壬辰倭亂 당시 碧蹄館戰鬪⁶²⁾로 소실되었다. 고양이 혁파되면서 倉庫가 옮겨진 坡州도 후일에는 모두 금표지역내로 포함되게 된다. 이렇듯 금표에 들어간 지역은 몇 년간에

61) 左贊成李季全京畿觀察使宋軼進禁標楊退限地圖西至臨津越邊五里許東至龍津北至檜巖南至龍仁縣北傳曰必順進百里爲限軼啓畿內之地過半人標內請以附近忠遺州縣割屬京畿且楊州坡州標外餘地及吏民等移屬隣邑標內各驛設於標外移楊州鎭丁他州何如傳曰可. 『燕山君日記』 第58卷, 燕山君 11年 6月 29日, 癸丑條(『일기』 p.308).

62) 1593년 壬辰倭亂 당시 明나라 군과 倭軍이 벌인 전투. 왜군의 승리로 명군은 開城까지 撤軍하였다.

결쳐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구역은 연산군 11년 6월 기록에 의하면 도성으로부터 각각 1백리 떨어진 곳까지 해당된다. 이중 구체적인 금표 구역 내의 실정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동왕 10년 8월

전교하기를,

“箭串에 사람들이 통행하면 노루나 사슴들이 평지로 내려오지 않아 긴급한 食治 사냥에 방해됨이 있으니, 목장을 다른 데로 옮길 곳이 없겠는가? 이계동에게 묻는다.”

하였다. 계동이 아뢰기를,

“國初의 일은 신이 알지 못하나, 일찌기 듣건대, 처음에는 목장을 綠楊坪에 두었었는데, 말이 많이 도봉산과 수락산 범에게 상하게 되므로, 목장을 전관으로 옮겼다 하여, 그밖에 水草가 있어 말을 칠 만한 곳은 신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관은 나의 토지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니, 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전관은 금지구역으로 하여 때로 사냥가는 것이 좋겠으니, 이계동을 시켜 전관에 금표를 세우고, 목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⁶³⁾

여기에서 보이는 箭串은 一名 살곶이로 현재의 城東區 一帶에 해당하는 곳이다.⁶⁴⁾ 이곳은 동쪽 금표와 직접 연결되는 요로인데 연산이 금표로 포함시킨 것이다. 금표로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연산군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보았다.

금표 구역의 통제와 경계는 금표구역안에는 물론 그 주변에도 금표를 바라볼 수 없도록 철거하였다.

연산군 11년 11월에

63) 傳曰箭串人物通行則獐鹿不下平原有妨藝現急食治之獵牧場他無可移處乎其問李季全季全啓國初之事臣未之知嘗聞初設牧場於綠楊坪而馬多爲道峯山水落山之虎所傷故移設牧場于箭串其他具水草牧馬之處臣未之愚也傳曰箭串是吾土地而非奪人之有也移設牧場於他處以箭串爲禁場時行遊獵可也令李季全立禁標于箭串移設牧場于他處.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25日, 壬午條(『일기』 p.51).

64) 韓昌道, 「箭串橋에 對하여」 『향토서울』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72.

전교하기를,

“궁궐은 깊숙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근래에 비록 여러번 禁標를 세웠지만 범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인가가 궁성에 너무 접근해 있는 까닭이다. 동서의 성터를 마땅히 물려야 할 것이니, 동으로는 후원을 환하게 바라볼 수 없는 곳까지 한계하고, 駝駱山 고지에도 아울러 담을 쌓아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바라볼 수 없게 할 것이며, 서쪽으로는 觀象監 고개로부터 禮賓寺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와, 경복궁 성의 서남 모퉁이부터 똑바로 서편으로 나가되 줄을 띠어 한계하여, 한계 안에 있는 인가는 기한을 정하여 철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담 쌓았던 터는 각자가 평평하게 골라놓게 하라. 나간 후에 그 한계를 따라 성을 쌓되 전부터 있던 성을 파괴할 필요가 없이 안팎으로 성이 있는 것도 또한 가하다. 또 성을 쌓을 때에 石面이 울퉁불퉁 하면 사람이 더위잡고 올라올 수 있으니 매우 불가하다. 그러니 그 臺石을 넓게 하고, 쌓아 올리는 石面도 또한 마땅히 平直으로 올려야 한다. 또 종묘의 3면에 있는 인가도 또한 마땅히 철거해야 하니, 동으로는 蓮池의 예전 큰 길까지, 서로는 창덕궁 東行廊까지, 남으로는 큰길까지 한계를 지어 철거하고 담을 쌓아라.” 하였다.

뜯기는 집이 수만 호인데, 漢城府가 기한을 엄격히 정하여 뜯으라고 독촉하므로, 혹 재목이나 기와를 실어갈 수 없어 버려둔 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길가에 둘러앉아 소리를 삼키면서 눈물을 머금었다.⁶⁵⁾

위의 내용은 금표의 규모와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담쌓은 方法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금표의 담장을 도성 주변까지 쌓고 부근의 민가들을 철거하여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금표내의 재산을 왕에게 그대로 바치는 이도 있었다.

65) 傳曰宮闕不可不深近來難屬立禁標犯者不止地北由人家迫近宮城故也東西邊城基宜退定東則以後苑不通望地爲限駝駱山高地並築牆使人不得等望西則自觀象監帖至禮賓寺隅自景福宮城西南隅直蹄而西引絕爲限限內人家定日期撤去其牆恒遺址令各平治而出後循其限築城前築城子則不必破壞內外有城亦可且城子造築時石面參差人可攀援而上堪不可宜廣其地臺石所築石面亦宜平直而上且宗廟三面人家亦宜撤去東則蓮池奪大路西則昌德宮東行廊南則大路爲限撤去築牆所撤家數萬漢城府刻期督撤或不能輸其材瓦棄不復顧人無所夜環坐路傍喏聲欲泣。『燕山君日記』第60卷, 燕山君 11年 11月 18日, 癸亥條(『일기』p.460).

연산군 10년 8월

南川君嶠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동대문 밖에 있는 것이 셋인데, 모두 금표 안에 들어 있으므로 바치기 바랍니다.” 하였다.⁶⁶⁾

燕山君은 일반 백성들과 官廳, 私有財産에 對한 禁標內 편입에 보상이 없었으나 一部 사람들에게 그에 온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연산군 12년 1월에

전교하기를,

“閔淑儀의 집이 금표 안에 들었으니, 그에게 列山正 偕의 屬公한 집을 주게 하라. 獐山守 稠의 집은 市價에 준하여 權淑儀에게 사사로 살 것을 허락하게 하라. 侍女 未珍의 집이 금표안에 들어 있으니 죄인 尹偉의 집을 주게 하라.” 하였다.⁶⁷⁾

위의 내용을 보면 연산군과 친분이 있고 또, 자신이 거느리는 후궁, 시녀들의 집들을 士大夫의 집으로 보상하여 주는 당시 사회상을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산군대의 정치·사회상은 조선조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儒學政治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백성을 위한 도학정치 대신 淑儀와 侍女만을 위한 향락과 유흥만이 금표내에서 있었다. 이러한 폐정은 연산군의 불교 탄압의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년 7월에

전교하기를,

“수색해 낸 중들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켜 궁안의 사냥 모릿군을 삼으라.” 하였다.⁶⁸⁾

66) 南川君嶠啓臣家在東大門外者三皆入禁標請獻之.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23日, 庚辰條(『일기』p.46).

67) 傳曰閔淑儀家入禁標其給列山偕屬公家獐山守稠家市推許令權淑儀私買侍女未珍家入禁標其給罪人尹偉家.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21日, 辛丑條(『일기』p.519).

68) 傳曰刷來僧人并屬內需以爲內獵驅軍.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7月 1日, 戊寅

금표의 확장과 연산군의 사냥은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승들도 큰 곤욕을 치루었다. 이들은 산속에서 금표 지역으로 잡혀와 강제로 內需司의 奴婢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행차시에 사냥에 나서게 되면 모릿군이 되었다.

금표 내에서는 또 사냥에 필요한 말을 키우게 하였다. 이들 말은 평상시에는 금표 내에서 풀을 먹게 하고 사냥 때에는 모릿군과 官吏들을 위해 동원되었다.

연산군 11년 4월에는

29일(갑신) 전교하기를,

“東·西標 안에 驛馬가 없어서는 안되며 또 田地도 많으니, 驛卒 중에서 스스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표안의 馬爲田(추수한 곡식을 역마의 먹이로 쓰는 밭)을 주어 騎·卜馬(타는 말과 짐 싣는 말)를 기르라.”

하였다. 69)

백성들이 강제로 쫓겨난 금표 구역 내에서는 기름진 경작지 대신 말먹이 풀이 자라는 馬爲田이 되었다. 이는 금표의 구체적인 용도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들 말은 주로 왕의 유흥과 사냥 등에 동원되었다.

한편, 금표 구역은 궁인의 葬地로도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 궁인은 연산군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부류인데 연산군은 이들의 무덤을 한강을 건너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대신 금표안 길지에 묻게 하였다. 무덤자리에 혹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으면 이를 옮기도록 傳敎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 예가 연산군 11년 9월의 기록에 보이는데 “麗媛이란 宮人이 죽자 王의 曾祖인 昌陵 곁에 묻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王이 麗媛을 생각하여 都城 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금표에 무덤을 쓰고 사냥하면서 보고자 함이었다.

條(『일기』 p.661).

69) 甲申傳曰東西標內不可無驛馬且多有田地驛卒中自願欲居者給獵內馬位田立騎卜馬. 『燕山君日記』 第57卷, 燕山君 11年 4月 29日, 甲申條(『일기』 p.284).

금표를 만들면서 왕릉인 昌陵을 훼손하게 만들었고 또 궁녀의 무덤을 능역에 사용케 한 것이다.

그러나 금표 구역을 늘 일반 백성에게 통행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왕이 필요로 하는 시기나 사람들에게 금표 구역을 이용토록 하기도 하였다. 즉, 연산군 12년 8월에

전교하기를,

“경기는 사방의 근본으로서 왕화가 앞서야 할 곳이니 관찰사의 품계가 낮아서도 안 되고 또한 혼자 일을 맡기도 어려우니, 직위가 높은 재상을 가려 별도로 칭호를 부쳐 관찰사를 겸임하도록 하되, 현관찰사 尹金孫은 다른 도의 절도사 예에 의하여 백성을 치안하는 뜻으로 별도로 칭호하여 관찰사의 버금이 되게 하고, 각도의 진상을 사옹원에서 명을 받들어 경기에 알리면 경기는 팔도에 공문을 돌려 진상을 封進토록 하라. 또, 금표 안 동·서·남 都檢察使는 역시 관찰사에게 소속시켜, 농사짓는 모든 일을 권장하고 겸하여 통치하도록 할 것이며, 경기 각 관내에 토지는 넓고 주민은 희소하여 농민을 이주시킬 만한 곳을 관찰사로 하여금 살펴보고 啓聞하도록 한 뒤에 경상도와 전라도 백성을 뽑아 이주시키도록 하라.” 하였다.⁷⁰⁾

위의 내용은 금표구역을 왕의 進上 곡물 재배를 위해 출입을 허용하는 기록이다. 즉, 慶尙道, 全羅道의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 진상할 작물을 재배케 하고 그 管理의 책임을 철저히 하여 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금표 내에서 향락과 유흥이 자주 벌어져 국가의 재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치 못하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표가 경기도 관내 멀리까지 설치되고 연산은 이 금표 구역 안에서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연흥을 자주 열었다. 궁녀들을 유흥을 위해 먼 長

70) 傳曰京畿四方之本王化所先觀察使不宜狃果又難獨任繹位高宰相別稱職曠無帶觀察使令觀察使尹金孫依他遺節慶使以安民之意別稱號亞於觀察使各道進上筆事司奪院承命論京畿京畿移文八道封進且標內東西南都檢察使亦屬於觀察使勤耕諸亭兼令統治京畿各官內地廣民稀可徙民之地令觀察使審視啓聞後妙慶尙全羅道民丁移入.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8月 8日, 乙卯條(『일기』 pp.702~703).

湍石壁⁷¹⁾까지 데리고 가서도 이 일을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왕이 유홍에 한창 심취되어 있었던 시절인 연산군 11년 3월에, 연산은 宰相들에게 命을 받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이 금표에 다니며 밤낮으로 유홍과 향락으로 보내자 宰相들은 한밤이 되어도 물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이 내용은 이 시기에 나라의 기강과 法道가 완전히 실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산군 12년 4월에

전교하기를,

“獻陵山・淸溪山・良才驛의 지역을 모두 禁標 안으로 들이되, 현재 살고 있는 2백 73호 내에 良人・公私賤을 막론하고 살릴만한 사람은 가려 그대로 살게 하여 모두 內需司에 붙이고 나머지는 뽑아내라.” 하였다.⁷²⁾

이는 금표 안의 양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내수사의 노비로 삼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이들 내수사의 官吏와 종들은 새로이 금표구역이 넓어져 사는 곳이 포함되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살며 금표내의 管理를 맡았다.⁷³⁾ 또한 내수사의 官吏 이외에 금표내에서 특별한 일을 추진할 때에는 承命牌을 주어 犯入者를 잡게 하였다. 한편 연산군은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표를 은폐하려 하였다.

연산군 12년 1월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문묘 참배(謁聖)를 하려고 하거던, 마땅히 ‘成均館이 궁궐과 너무 가까

71) 京畿道 坡州郡 長湍面 臨津江에 있는 절벽. 옛부터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72) 傳曰獻陵山淸溪山良才驛地並入標內所居人民二百七十三戶內勿論良人公私賤釋其可居者許令偕居並屬內需司其餘妙出. 『燕山君日記』 第62卷, 燕山君 12年 4月 14日, 癸亥條(『일기』 p.594).

73) 鄭鉉在, 「鮮初內需司 奴婢考」 『慶北史學 3집』 慶北大學校 史學科, 1981.

워서 옮겨 짓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만약 移安한 곳에서라도 곳이 참배하겠다면 따르게 하라. 만약 금표 안에 인가가 稀少한 까닭을 묻거던 마땅히 '봄 사냥(春蒐), 여름 사냥(夏苗)은 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사냥을 하자면 반드시 숲이 있어서 새 짐승을 길러야 하겠으므로, 백성들에게 물러가서 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게 하라. 만약 慕華館에 새로 담을 치는 까닭을 묻거던 마땅히 '이 館은 詔書를 맞이하는 곳이며, 또한 武術을 검열(閱武)하는 곳이므로, 담을 쌓아 잡인을 금한다.'고 대답하라. 그리고 서강, 한강의 인가는 중국 사신이 돌아간 후에 철거하게 하고, 중국 사신이 지나는 길가에 있는 禁標는 모두 빼어 없애게 하라." 하였다.⁷⁴⁾

이는 연산군이 금표로써 대표되는 폐정이 중국에까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신은 이미 그 연산군의 폐정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왕 10년 11월에 보면

史臣은 논한다.

“왕의 미치광이 같은 방탕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모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사방에 잡아 바치도록 독촉하고, 사신을 보내어 貢獻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산이나 바다의 기괴한 족속을 새장이나 우리에 매고 길을 이었으며, 武士들을 파견하여 범·표범·곰·말곰(猛貌熊罷) 등속을 산채로 잡아 다 후원에 가두어 놓고, 혹은 고기를 먹으며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쏘아 죽임을 낙으로 삼았으며, 돼지, 노루 같은 유는 산속에 놓아두고 駿馬를 타고 달리며 쫓아 비탈과 골짜기의 밀림 속을 드나들기를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하여, 비록 狩獵에 늙은 자라 할 지라도 더 나을 수 없었으며, 날로 공사의 준마를 징발하여 龍殿(왕이 타는 말의 마구)에 모으므로, 민간이나 역로에 이름난 말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⁷⁵⁾

74) 傳曰天使若欲謁聖則當答以成均館副近宮闕故令移造岩強欲謁聖于移安處則從之若問禁標內人家稀少當答以春蒐夏苗所不可廢若行蒐狩則必有林穀以養禽獸故今民退居若問慕華館新墻造築事當答以館是迎紹之地且閱武之所故築墻以防雜人且西江漢江人家天使回還後撤去天使所經路邊禁標木皆撤去.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21日, 辛丑條(『일기』 p.518).

75) 史臣曰王狂荒洸極凡孫禽異餘撤督四方至遣使責獸於是山海奇在之族築盤繁振級擇於遺分遺武士生遺奪猛貌熊罷之屬宰于後苑或嗅內以觀或親射爲樂如狝獐之類放諸山間乘駿馬駝遂出入庵谷崖密之間無小蹉跌難老於射獵者不能過爲日微公私駿馬髮于龍殿民間驛路各馬一空.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11日, 丁酉條(『일기』 p.137).

고 하였다. 이는 연산군이 중종반정 이후 명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도 증명되었다.

2.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1) 기훼제서울

다음은 대자동 금표비의 앞면에 기록되어 있는 기훼제서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훼제서울은 「大明律」吏律 棄毀制書印信條의 한가지 法令이다.⁷⁶⁾ 이 법령의 처음은 “곧 왕의 敎旨 및 사신에게 내리는 驛馬 發給에 관한 御印 찍힌 文書와, 사신에게 내리는 乘船에 관해 발급한 文牒 또는 官司의 印章 및 夜巡에 관한 牌面을 故意로 내버리거나 破損한 자는 斬刑에 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산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훼제서울은 본래의 의미인 문서를 훼손, 파기하는 자를 다스리는데 사용되었다. 『世祖實錄』 36권 11년 8월 16일 신묘조에 보면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저 배를 타는 사람이 소지하는 물건은 본시 금방함이 없는 까닭으로 금은·주옥과 여러 文書を 몰래 꺾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금후로는 영·진을 왕래하는 사람과 조전·상판으로 어물을 캐고 잡는 것 등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각 그 배가 정박하는 곳의 수령·만호가 일일이 끝까지 수색하고서야 바다를 지나도록 허락하소서. 만일 몰래 꺾가지고 간 뒤에 드러나면 청컨대, 자기 자신을 기훼제서울로써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⁷⁷⁾

76) 崔殷範, 「李朝刑法에 있어서의 明律의 位置」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60.

77) 辛卯兵曹啓凡乘船人厚持物件本無禁防故金銀珠玉及諸文書潛符入海者頗多令後營鎖往來人

위의 내용은 세조년간에 문서 등을 가지고 바다의 섬으로 가는 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기궤제서울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과 선왕들과는 달리 연산군은 이 법률을 諺文使用禁止法으로 이용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 연산군은 포악무도한 죄상을 열거한 諺文匿名投書事件의 연루자를 붙잡기 위하여 이 법률을 도용하였다. 당시 이 법률은 制書違反律과 制書棄毀律로 나뉘어져 있다.

전교하기를,

“언문을 쓰는 자는 棄毀制書律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制書有違律로 논단하고, 조사의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 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를 언문으로 번역한 따위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⁷⁸⁾

그러나 금표가 설정되고 그 구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금표 내의 범입자가 늘어나자 연산은 이 기궤제서울을 금표 관리를 위한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연산군 12년 8월조에 보면,

전교하기를,

“장단에 거동할 때는 미리 의금부 당상·郎廳을 보내어 온 길 주변의 雜人을 모조리 내쫓아 바라보니 못하도록 하고, 내거동에는 옹지관 문 치가 앞을 인도하고 內豎 2인이 뒤를 옹호하게 하되, 만일 숲속에 잠복한 자가 있으면 棄毀制書律로 논단하고 의금부 당상·낭청은 장 1백을 쳐 파직시켜라.” 하였다.⁷⁹⁾

及轉漕商販採捕魚物一應入海人各其船到泊靑守令萬戶一一窮搜方許過海萬一潛狹後現則請本身以棄毀制書律論守令萬戶以制書有違律論從之. 『世祖實錄』第36卷, 世祖 11年 8月 16日, 辛卯條.

78) 傳曰諺文行用者以棄毀制書律知而不告者以制書有違論斷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如翻譯漢語諺文之類勿禁. 『燕山君日記』第54卷, 燕山君 10年 7月 22日條(『일기』 p.572).

79) 傳曰長湍舉動時預遣義禁府堂上郎廳一路雜人並刷出使不得通望內舉動則潛濫官文致前遣內豎二人後據若有潛伏草莽之中者以棄毀制書律論斷義禁府堂上郎廳杖一百罷職. 『燕山君日記』第

위의 기록은 왕이 멀리 나아갈 때 여러 관리를 동원하여 자신을 호위케 하는데 만일 금표 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궤제서울로 논란하고 아울러 그 책임을 물어 해당 관리를 파직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아마도 연산군이 금표 내에서 피살될 것을 우려해 내려진 전교인 듯 하다.

연산군은 금표와 그 부근 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와 경계로 일반 백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소홀히 한 官吏나 왕의 뜻에 대하여 협조치 않는 사람들에게 棄毀制書律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연산군 11년 8월의 내용이다.

“京外の 자색 있고 音律을 아는 私婢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進告하게 하되, 진고에서 빠지는 자가 있거든 棄毀制書律로 論罪하라.” 하였다.⁸⁰⁾

이 내용 중에 京外는 곧 조선 전지역을 가리키며 姿色과 音律을 아는 私妃는 곧 아름다움과 音樂을 아는 個人 奴婢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빠지게 보고하거나 전혀 보고하지 않을 경우 棄毀制書律로 論罪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연산군은 금표에 나아가 사냥이란 명목으로 각종 유흥과 향락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궤제서울이 폭군의 폐정을 유지시키는 근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추종하거나 유흥을 연 官吏를 비판한 일반 관리에게 연산이 큰 벌을 기궤제서울로 내리는 내용도 10년 8월조에 보인다.

전교하기를,

또 김인령이 위에 속한 일을 논계한 것은, 마땅히 제서를 기궤한 율로 논하되, 부관

63卷, 燕山君 12年 8月 20日, 丁卯條(『일기』 p.715).

80) 傳曰京外有資色解音律私婢舍其主進告脫有泥告者論以棄毀制書律. 『燕山君日記』 第59卷, 燕山君 11年 8月 22日, 甲戌條(『일기』 p.376).

참시하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하였다.⁸¹⁾

이를 통해 볼때 당시 기궤제서울은 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剖棺斬屍하고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 이제 기궤제서울의 사용은 처음의 諺文使用禁止에서 좀더 여러 부분의 범법자에게 적용된다. 연산은 특히 이 법률을 금표의 유지 관리와 함께 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를 탄압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는 기궤제서울을 국가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비록 작더라도 남에게 누설하여 그 이야기가 도성내에 들리게 하는 것과, 듣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 등을 모두 기궤제서울로 논죄하였다. 또 그와 관련된 처자들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모두 杖을 쳐 전가족을 바다밖 섬으로 옮기었고 이외에도 금표를 쌓는데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자에게도 이 기궤제서울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기궤제서울은 중앙 관리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각 고을의 수령 등도 죄인을 잡기 위하여 힘쓰지 않을 때 기궤제서울로 처벌을 받았다. 이는 이 법률이 금표를 보존 管理하기 위함과 국가의 주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궤제서울은 처음 명나라의 법률로서 조선왕조가 받아들여 본래의 의미인 문서 훼손 등에 사용되었으나 연산군은 이를 전혀 다른 의미인 한글사용금지와 금표 범법자의 처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2) 금표 침입의 처벌과 백성들의 상황

금표 구역의 설정과 운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것은 일반 백성들이

81) 且金引齡論啓屬上之事宜論以棄毀制書律割棺斬屍籍投家産.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0日, 丁卯條(『일기』 p.23).

었다. 연산군은 금표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使臣을 통해 중국으로 알려지거나 국내에서도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산군이 금표부근의 집들을 철거하고 사람의 통제를 철저히 하여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것도 금표의 비밀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금표구역의 기궤제서울에 의한 통제는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연산군은 기궤제서울에 의한 백성들의 管理 및 처벌과 함께 三族을 멸하는 법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연산군 10년 8월에 보이는데

“그 안에 田宅을 가진 小民들이 혹 원망할 터이나, 지금 풍속을 크게 개혁시키고자 하여금 금령을 시행하는 것인데, 근일 投書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사로운 분으로 위에 속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니, 이는 실로 웃사람을 능멸하여 그런 것이다. 무릇 죄주는 법이 장 1백의 죄가 있고 1백 이상의 죄도 있으며 또 極刑도 있는데, 亂言을 하는 자와 같은 것도 또한 아주 해로운 것과 그다지 해롭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형은 비록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三族을 멸하는 법이 있었으니 만약 이런 법을 쓰기로 한다면 한 집안의 형제나 숙질이 서로 경계하여 형이 착하지 못하면 아우가 책하고, 아재비가 착하지 못하면 조카가 경계하여, 이렇게 서로가 힘쓰게 되면 풍속이 거의 바로 잡히게 되리라. 이런 뜻으로 글을 지어 대중을 타이르도록 하라.”

하고 또 주서 尹龜壽를 시켜三公에게 수의하도록 하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글 중에 삼족을 멸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柳 洵 등이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삼족을 멸하는 법은 비록 秦나라 때에 비롯되었다 하나, 李 斯에게만 삼족을 멸하였다는 글이 있을 뿐, 이밖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세에는 某某族이 삼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 없어, 漢나라 이후 천백 세가 되도록 쓰지 않던 법이니, 지금 성세에 거행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한 안에 田宅을 가진 자들이 원한을 품고 말하기를, ‘금한이 어찌 그렇게도 광대하고, 荒田이 어찌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데, 또 서생의 不肖한 자가 있어 입을 모아 서로 의논을 하여 혹은 臺諫을 주촉하고, 혹은 사람을 주촉하여 소장을 지어 紛紜하게 陳訴하니, 이는 너무도 불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족을 멸하는 법을 세워 풍속을 고

치는 특별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진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풍속을 고칠 때에는 특별히 딴 법을 만드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승정원에서 製述하도록 하였는데, 승지가 일이 많다는 것으로써 말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또한 싫어하는 것이니 그를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⁸²⁾

위의 내용은 금표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에게 연산이 삼족을 멸하는 명을 내리는 기록이다.⁸³⁾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중의 한 내용을 보면 연산군 10년 8월에,

전교하기를,

“서쪽 금표를 물려서 세우라. 만약 입표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 및 옛 땅을 생각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리라.” 하였다.⁸⁴⁾

이 내용에서 보이는 서쪽 금표는 당초 德水로부터 도성까지 그 거리가 30리였으나, 왕이 좁다 하여 다시 넓히도록 한 것이다. 금표가 확장되면서 수확철이 된 곡식을 잃게 된 백성들이 원망하는 기색이 보이자 연산은 三族을 滅한다는 무시무시한 傳敎를 내리게 된다.

연산군 10년 11월의 기록에 의하면

82) 貢小民之有田宅於其中者容或怨之今欲使風俗丕變方行禁令而近日有投書人以其私憤至爲屬上之言此實陵上而然也九罪律有拓一百有一百以上之罪又有極刑若亂言者亦有切害不切害之異刑難有差籍而罪則一也古有妻三族之法若用此法則一家之內兄弟叔姪來相警戒兄有不善則弟責之叔有不善則姪戒之以之相勉則庶幾風俗歸正矣以此作文論衆又命往書尹龜壽收謹子三公又令弘文館致古書中妻三族法以啓柳洵等驢上載兄當但妻三族之法灘云筆自泰世然只於李斯有妻三族之文此外無聞馬故後世無有明言某某族爲三族自漢後歷千百世不行之法方令城世恐不可舉行傳曰禁限內有田宅者舍怨而曰禁限何其大廣耶荒田何其太多耶又有書生不消之革交口相議或族臺練或屬人草跡紡紆陣許茲甚不可故欲立夷三族之法以爲草俗之別典此難泰法爾俗之時特設別典不亦可乎.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7日, 甲子條(『일기』 p.15).

83) 張錫權, 「朝鮮王朝 刑罰制度의 研究」 檀國大碩士學位論文, 1976.

84) 傳曰退樹西禁標若有言立標未使者及懷思舊土出怨言者妻三族.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6日, 癸亥條(『일기』 p.13).

“금표 안을 범한 사람 천둥은 머리를 베어, 전례대로 금표 근처에 효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라.”

하였다.⁸⁵⁾

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연산군이 금표의 管理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중 효수 등은 보통 일반적인 극악무도한 살인죄나 역모죄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되었는데 연산은 금표 범입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금표의 범입의 처벌한 처벌은 금표 부근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폐해를 끼치었다.

당시 전국 팔도의 길은 이곳 금표에 와서는 멀리 돌아가거나 단절되었으며 금표밖에서 도둑질한 자가 몰래 금표에 숨어 왕기 1백리가 盜賊의 소굴이 되었다. 또 금표 내에 있는 내수사의 종들은 일반 백성을 몽둥이로 몰아내어 금표에는 인적이 끊이게 되었다. 당시 금표구역내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연산군 11년 10월의 기록이다.

옛 길을 막고 새 길을 닦는데, 서쪽은 鷲梁·古富平을 거쳐 洛河에 이르고, 동쪽은 果川·古廣州·慶安驛·德淵·車踰巖·仇羅驛을 거쳐 朝宗古縣에 이르니, 옛 길과 비교해 보면 모두 數日 길을 돌게 되었다. 그때 부역이 번거로워 백성들은 살 길이 없으므로, 많이 모여서 도둑이 되어 사람과 물건을 겁탈했다. 그리하여 길가는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각 도에서 바치는 공물까지 약탈당하였는데, 경상·전라·충청도에서는 가끔 수백 명이 떼를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표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도둑들이 그를 의지하여 보금자리를 삼아 난로 나와 죽이고 약탈하는데, 아무리 서울의 즐비하게 모여 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또한 꺼리지 않고 어둡기만 하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겁탈하였다.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아 가도 사람들은 모두 피하여 숨고 감히 잡지 못하였으며, 그중에도 더욱 간악하고 교활한 것은, 왕명을 받들었다고 일컬으면서 똑바로 인가에 들어가 보화와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허둥지둥 달아나 숨을 뿐 따져볼

85) 傳曰禁標內犯入人千同斬首依前例梟首於禁標近處使入觀視.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2日, 戊子條(『일기』 p.128).

수가 없었으므로 매우 괴로워하였다.⁸⁶⁾

위의 내용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폐해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특히 경기도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이는 경기도의 고을들의 반이상이 금표에 들어갔고 각종 물건을 운반해야 할 길이 막혔으며 禁墻을 쌓는 등 많은 시간을 부역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성부근과 도내 주민들은 다른 도로 옮겨가거나 폐도독이 되었다. 금표에 의해 혁파된 고양군의 경우 (표2)와 같이 인구수, 호수 등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토지의 결수는 오히려 줄어있는 모습이다.

표2) 大慈洞 禁標碑 設置 前後의 高陽郡 現況 比較表

연 대	호 구 수	인 구 수	토지결수	인용문헌
朝鮮 世宗 30년 (1448)	679호	1,314명	6,326結	「世宗實錄」
朝鮮 英祖 31년 (1755)	3508호	13,878명	3,937結	「高陽郡誌」

이를 통해 볼때 호구 수는 6배, 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토지의 결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양 지역의 토지 결수 감소는 금표의 설치와 함께 양란을 거치면서 국토의 황폐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 지역 뿐만이 아니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조 각 시기의 토지 결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6) 寒舊路開新路西西由路梁古富平達于洛河東由果川古廣州慶安驛德淵車踰巖仇羅驛達于朝宗古縣視舊路皆汚數日程時臟役繁興內不聯生多飛爲盜劫掠人物行路或絕至奪諸遺供進之物慶尙全羅忠清等道座座數百爲群及禁標之興誠依以爲籍日出殺掠難都下坊曲臟比調芽之中亦不忌憚至昏群行劫奪禁其家取其財而去人皆壁. 「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2月 2日, 壬子條(「일기」 p.533).

표3) 高麗末 朝鮮朝 各 時期別 土地結數 變化表

(단위 : 結)

연 대	전국토지 전결 수	참 고 문 헌
高麗 恭讓王2년 (1390)	798,127	「高麗史」
朝鮮 太 宗 4년 (1404)	931,835	「太宗實錄」
世 宗14년 (1432)	1,632,006	「世宗實錄地理志」
燕山君7년 (1503)	1,032,070	「燕山君日記」
英 祖45년 (1769)	748,583 (실결수)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英祖實錄」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0·13·24권, 탐구당, 1994. 참조

위에서 보면 고려 공양왕대 이래로 전국의 토지 총 전결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종조를 고비로 하여 연산군대에는 약 60여만 결의 토지가 감소하고 이어 금표의 설치와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영조 연간에는 약 30여만 결의 토지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고양 지역이 금표로 인하여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금표의 설정으로 因하여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금표의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던 권신들도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 아마 이러한 토지의 수탈은 곧 있게 될 중종반정에 여러 중신들이 가담하게 하였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금표를 계속 범하게 되는데 이는 굶어 죽으나 금표에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표 구역의 확장과 기궤제서울에 의한 엄한 처벌은 결국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이 되었으며 당시 지배층에게는 경제적 기반인 토지를 잃게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

동안 개인적인 원한, 연산의 포악함으로 인해 중종반정이 일어났다는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반정의 요인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의 撤去

대자동 금표비를 비롯한 연산군의 금표비는 연산군의 폐정이 심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반정의 기운이 나돌았다.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귀향중이었던 李長坤과 성희안, 박원종 등이었다. 이들은 반정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인식하면서도 각자 반정을 준비하다가 성희안, 박원종 등이 먼저 거사하게 된다. 이들 중 성희안은 금표를 잘못 관리하였다가 이조참판에서 말관직으로 쫓겨난 인물이며 박원종은 경기도 관찰사 재직시 많은 관할 구역이 금표에 포함되어 그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인물이다.

결국 연산군 12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축이 된 세력에 의해 연산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니 이가 곧 中宗이다.

중종과 새로이 권력을 잡은 세력은 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共同認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종반정의 주도적인 인물인 박원종, 성희안은 모두 금표와 관련된 인물들로 그간 중종반정의 연구가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 원한 등으로 비추어져 왔으나 앞으로 이들의 금표내 토지소유관계 등을 살펴보는 사회경제사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中宗實錄 元年 9월에 보면,

都城 사면에는 1백 리를 한정하고 禁標를 세워서 노닐고,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棄毀制書律로 논죄했다. 항상 單騎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다. 따로 應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隨從시켰다. 楮子島·豆毛浦·濟川亭·長湍의 石壁, 莊義의 水閣, 延曙亭·望遠亭·慶會樓 後苑 등의

곳에서 항상 홍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큰 거둥이라 하였다.

社稷北東에서 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仁王帖에서 동쪽으로 駝駱山까지 크게 民丁을 징발하여 높직한 돌성(石城)을 쌓았다. 廣州·楊洲·高陽·陽川·坡州 등 읍을 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內需司의 노비가 살게 하고, 惠化·興仁·光熙·彰義 등의 문을 閉鎖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을 통하게 하매,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와하고, 땀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昌德宮 후원에 쌓은 臺는 높이가 1백여 척이고, 이름을 「瑞慈臺」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여 인을 앉힐 만하며 그 아래에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또 창덕궁 후원에서 경복궁 경희루까지 假家 3천여 칸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潮水를 끌어들이 彰義의 水閣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都監으로 하여금 水道의 깊이·너비·高低를 측량하게 하여, 거기에 동원될 役夫의 수를 헤아려보면 50여만이 내려가지 않을 것인데, 다음해에 역사를 시작하여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修理都監·築城都監을 두고 三公으로 都提調를 삼았으며, 그 나머지 副提調 및 郎官·監役官이 2백여 명이 되었다. 여러 곳을 分掌하여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築牆軍·築臺軍·鑿池軍·離宮造成軍·仁陽殿造成軍·斫材軍·流材軍 따위를 일시에 아울러 징발하여 독촉해서 赴役하게 하니, 민간이 소동하여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流離飄泊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崇禮門 밖 路梁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산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서, 經筵을 폐지하고 司諫院·弘文館을 혁파했으며, 持平 2員을 감하였다. 무릇 上疏·上言·擊鼓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 씬이 극히 참혹하여, 烙訊(단근질로 신문하는 것)·寸斬(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것)·剖棺斬屍(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어 시체의 목을 베는 것)·碎骨飄風(뼈를 뺏아 바람에 날리는 것)을 상전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한 자는 屬上(위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고, 論啓에 관계되는 말을 한 자는 逆命한다 일컬어, 이리저리 엮어 죄를 만들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따로 密威廳을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국문하였는데, 포박하고 峻刻하여 억울하게 誅戮을 입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즉위 이후의 日記史草에 만약 直言讜論이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家藏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또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兼帶春秋

(춘추관의 직을 겸임함)의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他官으로 校史官이라 일컬어, 즉위 뒤의 實錄을 撰集하게 하였다. 또 스스로 尊崇하기를, 「憲天弘道 經文衡武」라 하고 하례를 받고 頒赦하였다. 예로부터 荒亂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⁸⁷⁾

이는 당시 중종을 비롯한 朝廷大臣들의 연산군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산군의 폐정 중의 하나인 금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폐단을 알고 이에 대한 평가도 내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금표가 革罷된 것은 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서 금표였다. 즉, 중종 원년 9월초에 중종은 다음과 같이 동서 금표의 革罷를 命하였다.

洪淑儀의 직첩을 두로 주어 慈壽宮에 들게 하고(숙의는 성종의 후궁으로, 폐주가 직첩을 빼앗아 궁에서 내쫓았던 이) 朴崇質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동서의 금표를 혁파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대신의 말을 좇은 것이다.⁸⁸⁾

87) 都城四面限百里立禁標以爲遊略之所入標內者論以棄毀制書律常以單騎駝鷹往來不計晝夜別設鷹師軍葛餘各田獵常令隨從楮子島豆毛浦濟川亭長湍石壁裝義水閣延曙亭望遠亭慶會樓後怨等處常率興清日夜遊宴時稷爲小舉動大舉動自社稷北洞抵興仁門盡撤人家立標自仁王岾東至駝駱山大業民丁高築石城華廣州楊州高陽陽川坡州等邑窓遂其民以內需司奴婢居之閉惠化興仁光照彰義等門又禁津渡只通路梁行旅甚若樵採亦難昌慶宮後苑築臺高百餘尺名曰瑞怨臺上可坐千人鑿池其下作亭其傍又自昌德宮後苑至景福宮慶會樓連造假家三千餘間欲引望遠亭下潮水鑿通彰義水閣下使都監審量水道深廣高低而計其役夫則不下五十餘萬將於明年始役而不及就置修理都監築城都監以三公爲都提調其餘副提調及郎官監後官多至二百餘員分掌諸所侵民甚奇如築墻軍築臺軍鑿池軍離宮造成軍仁陽殿造成軍所材軍流材軍一時並督令赴役民間騷動家無留丁流離燔越十室九空役重糧之餓相繼崇禮門外路梁之間積戶如山燕山自知其惡恐有言者廢經籍革司諫院弘文館減持平二員九上號上言繁鼓等事一皆禁之用刑極慘以烙訊寸斯剖棺斬屍碎骨飄風爲常典辭遍內人者以爲屬上言涉論啓者稱爲逆命羅織成罪小不容貸又別設密威廳常遣承旨覲因暴惡竣刻枉被誅戮者不可勝數卽位以後日記史草如有直言議論盡令割割家藏史草亦令收人且令不記人君過失盡革無帶春秋之號以他官稱校史官使選集卽位後寶鍊又自尊崇曰憲天弘道經文緯武受賀頒赦自古荒亂之主難多未有如燕山之甚者也. 「中宗實錄」第1卷, 中宗 元年 9月 2日, 戊寅條.

88) 命還給拱寂儀職牒入慈壽宮復朴崇質官罷東西禁標皆從大臣之言也. 「中宗實錄」第1卷, 中宗 元年 9月 2日, 戊寅條.

당시 이 금표는 한성의 서쪽인 사직동으로부터 동쪽의 홍인지문에 이르는 구간이었는데 이 부근과 안쪽에는 백성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금표에 대해서도 중종 10년 8월에

전교하였다.

“경기의 각 고을에서, 폐조 때의 禁標(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철거하고 流亡한 사람의 陳荒田을 한두 곳 개간하여 경작하면, 아직 개간하지 않은 밭까지 아울러 조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이 개간하지 못하여 폐해가 막심하니, 유망한 사람의 묵은 밭은 밭은 헛수를 한정하여 免稅하게 하라.” 89)

고 하여 금표를 철거하게 된다.

대자동의 금표비가 깨어지고 쓰러져 그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당시로 여겨진다. 이는 금표로 인해 피해를 본 백성들이 연산에 대한 보복행위의 형태에서 나온 행동이다.

중종은 금표의 철거를 계기로 금표안에 새로이 관청을 두게 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諫院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羅將, 早隸, 奴婢 등을 모두 본역으로 돌려주었다. 또, 중종은 경기도내의 백성에 대해서는 京倉에서 나누어 준 곡식에 대하여 다음 해까지 그 수납을 기다려 주었다. 이는 中宗反正 뒤에 금표에 모인 사람이 적었고 또 逋脫한 租稅의 독촉을 입어 평안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命令이었다.

중종은 연산군대의 금표를 혁파한 뒤 이곳을 금표이전의 옛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노력을 하게 된다. 금표내의 東學, 西學, 南學을 무성한 풀밭에서 청소하고 정돈하여 유학하는 선비들이 모이게 하였다. 또한 畿邑의 백성을 위하여 京倉에서 나누어 준 곡식을 다음해 추수까지 연기해 갚도록

89) 傳曰京畿各官廢朝時禁標撤去流亡人陳荒田一二處起耕則未閉墾田並微稅故民不得閉墾弊瘼莫甚流亡人陳田其令限年免稅. 『中宗實錄』第22卷, 中宗 10년 8월 16日, 庚卯條.

하였다. 이외에도 중종은 금표구역에 살다가 변방으로 쫓겨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래 살던 고향으로 오도록 하여 폐허화된 금표를 복구하게 하였으며 중종 2년에는 成均館의 수리를 命하는 教旨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중종의 복구 노력은 그후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나 이미 혁파되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한 백성들이 돌아와 관아를 복구하여 금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였다.

결국 연산군의 폐정에 의한 정치는 중종반정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폭군 연산군의 폐위는 곧 금표비의 철거로 이어졌는데 『중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볼때 금표 구역의 철거는 왕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금표비 자체의 훼손 및 철거는 그간 큰 고통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금표비가 연산군의 폭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었다.

結 語

이상에서 보듯 禁標碑는 본래 왕과 왕실의 사냥과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일반인들의 거주 및 왕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금지 구역을 표시한 標碑의 일종이다. 중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대체로 고대사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燕山君 집권기 1504년(燕山君10年, 甲子年) 경기도 고양시에 세워진 ‘대자동 금표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결어에 대신하여 우선 이 금표비를 발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요약하기로 한다.

대자동 금표비는 1994년 11월 본 연구자가 고양시 문화 유적 일제 조사 도중 고양시 대자동 간촌마을에서 처음 발굴하였다. 발굴 당시 금표비는 오랜 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비면 곳곳에 황토 흙이 묻어 있었다. 비의 전체적인 구조는 화강암의 臺座, 碑身, 碑頭로 되어 있었으며 특히 碑頭는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비의 앞면에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라 쓰여진 14자의 銘文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비의 뒷면에는 아무런 銘文이 없었다. 이 대자동 금표비가 연산군대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棄毀制書律’이 연산군 당대에만 금표 침입자에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우선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실을 결론에 대신해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대자동 금표비’는 본래 금표비의 설립 목적인 왕과 왕실의 사냥과 군사 훈련의 목적 이외에 유흥과 향락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운영은 그 규모에서도 엿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표 구

역이 금표비를 중심으로 사방 10리로 제한되었던 점에 반해 연산군조에 세워진 이 '대자동 금표비'는 사방 100리로 금표 구역이 크게 확장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연산군 폐정의 또다른 일면을 확인해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둘째, 본 '대자동 금표비' 연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 향토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3년간(1504~1506)의 '단절된 역사'의 원인과 그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기간의 고양시 官衙와 倉庫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 등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주요 요인이 바로 '대자동 금표비'에서 기인한 것임이 실증적으로 究明되었다. 바로 이 점은 고양시 향토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밖에 본 '대자동 금표비'에 담겨 있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 명문 가운데 '棄毀制書律'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糾明하였다. 우선 이 법률 조항은 본래 중국 명나라의 大明律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법률 제정의 본래 목적은 국왕과 왕실의 문서의 내용 조작 및 破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 집권기에는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한글 사용을 금하는 이른바 '언문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장치로 변용되었다. 이는 연산군의 포악한 폐정을 비난하는 '언문익명투서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 법률을 도용 내지 남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래 태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삼죽을 멸하거나 효수하는 극형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棄毀制書律'이라는 법률 조항이 '대자동 금표비'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이 금표비가 세워진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대한 생활상의 피해를 주었는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등으로 '대자동 금표비'는 이 지역 백성들의 怨聲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금표 지역을 사방 백리라는 넓은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지역에 科田을 소유하고 있던 관리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자동 금표비’는 연산군의 廢位와 ‘中宗反正’(1506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蓋然性이 높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후일로 기약토록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基 本 史 料

「燕山君日記」

「高陽郡誌」

「中宗實錄」

「孟子」

「然藜室記述」

「韓國人名大辭典」新丘文化社，1967.

2. 研 究 書

檀國大史學會，「韓國古代史」서울，學研文化史，4號，1994.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서울，探求堂，1984.

李弘植，「國史大辭典」서울，百萬社，1974.

精神文化研究院，「民族文化大百科辭典」서울，웅진출판사，1993.

高陽文化院，「高陽郡誌」京畿，高陽市，1987.

高陽文化院，「高陽市文化財大觀」京畿，高陽文化院，1995.

李進熙，「廣開土王碑의 探究」서울，一潮閣，1982.

李亨求・朴魯姬，「廣開土王碑新研究」同和出版公社，1986.

尹泰榮・具素青，「李朝五百年野史」서울，眞文出版社，1972.

- 鄭飛石,『李朝女人史話』서울,正音社,1976.
- 서울市史編纂委員會,『서울特別市史』서울,東亞出版社,1963.
- 崔臣海,『燕山君의 精神世界』서울,관동출판사,1975.
- 楊州文化院,『楊州郡誌』京畿道 楊州郡,楊州郡廳,1994.
- 坡州文化院,『坡州郡誌』京畿道 坡州郡,坡州郡廳,1995.
- 民族文化推進委員會,『國譯燕山君日記』서울,1974.
- 姜萬吉,『燕山君』韓國의 人間象 1卷,서울,新丘文化史 1965.
- 李蘭暎,『韓國金石文追補』서울,中央大學校 出版部,1968.
- 黃壽永,『韓國金石文遺文』서울,一志社,1976.
- 任昌淳,『韓國美術全集』서예,서울,同和出版公社,198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서울,웅진출판사
1993.
- 京畿道廳,『京畿道 指定文化財 解說』수원,京畿道廳鄉土史料室,1995.
- 瀨野馬熊,『燕山君의 二大禍獄』동경,청구학총 3,1931.
- 申奭鎬,『朝鮮成宗時代의 新舊對立』서울,朝鮮史編修會,1944.

3. 研究論文

- 權敬愛,『廣開土王陵碑文解釋의 再整理』서울,高麗大學教 碩士學位論文,
1980.
- 廉胤洙,『中原高句麗碑小考』서울,高麗大學教 碩士學位論文,1983.
- 金貞培,『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問題點』『史學誌』13輯,1979.
- 木下禮仁,『中原高句麗碑』서울,『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史學論叢』
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事業會,1991.

-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輯, 1964.
- 文玉祥, 「香村埋香碑에 對한 小考」 『全國鄉土史研究論文集3집』
文化院聯合會, 1993.
- 허재일, 「四大士禍와 權力鬭爭에 關한 研究」 서울,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81.
- 崔殷範, 「李朝刑法에 있어서의 明律의 位置」 서울,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60.
- 張錫權, 「朝鮮王朝 刑罰制度의 研究」 서울, 檀國大碩士學位論文, 1976.
- 鄭鉉在, 「鮮初內需司 奴婢考」 『慶北史學』 3집, 慶北大學校 史學科, 1981.
- 千惠鳳, 「燕山朝의 印經木活字本에 對하여」 曉城趙明基博士 회갑기념불
교사학논총, 曉城趙明基博士회갑기념불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65.
- 鄭泳鎬, 「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조사 경위」 서울, 檀國大學校 史學會
『史學誌』 1978.
- 李基白, 「단양적성비 發見의 意義와 적성비 王敎事 部分의 檢討」 서울
檀國大學校 史學會 『史學誌』 1978.
-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對한 檢討」 서울, 檀國大學校
史學會 『史學誌』 1979.
- 韓昌道, 「箭串橋에 對하여」 서울, 『향토서울』 서울시史編纂委員會, 1972.
- 金洪哲, 「下溪洞所在 國文古碑研究」 서울, 『향토서울』 서울시史編纂委員會
1976.
- 元永煥, 「朝鮮時代 漢城府 閉止」 서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5.
- 南都泳, 「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 『한국사론9』 국사편찬위원회
1981.

ABSTRACT

A Study of King YEONSAHN'S Prohibiting-boundary Stone (Mainly on the stone in DAEJA-DONG, KOYANG City, KYOUNG-KI Province)

CHONG DONG-IL
DEPARTMENT OF HISTORY
MAJOR IN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ADVISED BY YOON KYUNG-RO
IN HANSUNG UNIVERSITY

The subject of the study king YEONSAHN'S(燕山君) Prohibiting-boundary Stone in Dae-jadong, Koyang City, Kyoung-Ki Province, The stone was built in the period of YI Dynasty(朝鮮王朝), The stone was built to prohibit people from entering the district for the King's own hunting, military training, and entertainment.

The Stone is the only one up to the present time in Korea, and the inscriptions on the stone are well-maintained without any damage. The stone 63 has a very significant value metallurgically, too.

The Stone was found for the first time by the researcher in November, 1994 and was assigned as a provincial treasure.

The Stone is granite. On the front of the stone was written. The intruders will be punished by the law. The Stone is 147cm. tall, 23cm. thick and 55cm. wide.

After thorough study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s and the King's diary, we can see that it was built in 1504. The inscriptions are recognized a good research subject for the history of Korean laws.

The records of the inscriptions were often quoted in. The Diary of King YEONSAHN'S about his reign of twelve years. The district was limited to the suburbs of the capital before his reign of ten years, but just before his reign of 12 years, the district was expanded to the area within 43 km.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intruders were killed or were hanged.

The inscriptions trace its origin to China. In China the Kings mainly used the district for their hunting, but King YEONSAHN used the district for his own entertainment and rest. The kings before his reign used the district for hunting or military exercises, but the King used the district for his personal entertainment and pleasure with his court kisaengs. Accordingly the area was devastated badly, and the villagers around the district were suffered very much,

The King, court-ladies, care-takers and servants were allowed to enter the place. They had various responsibilities to serve the King.

Because of his obnoxious practice and rule, he was become a cruel tyrant, and finally was expelled from the dynasty by Park Won Chong and Sung Hee Ahn and others.

The cruel ruling of King YEONSAHN was confirmed again by the researcher. Historical documents of the inscriptions were found on the site. The study is considered to be archaeologically significant. At same time the study offers important research materials for legal systems of Yi Dynasty.